

국민을 웃게하는 힘!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국민을 웃게하는 힘! 적극행정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



감사원

발간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가 간 경쟁도 심해지고 있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에 공직사회도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탈피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문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실패는 징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을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사회의 활력 제고'를 감사원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직자가 열심히,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 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 등 여러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현장의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를 지원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법·제도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이를 지원하는 제도들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과 신뢰가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면 오히려 나중에 책임질 일만 많아질 것이라는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공직사회에 더욱 확산시키고 일선 공직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 사례집도 이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작성·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집에는 적극행정면책 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절차, 신청기준 등과 함께 그간 감사원과 각 행정기관들의 운영사례를 아울러 담았습니다.

아무췌록 본 사례집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적극 행정 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내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2019년 4월
감사원장 **최재형**

책 구성

사례집은 제1장.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 제2장. 「사전컨설팅 제도」, 제3장. 「적극행정 면책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에서는 현재 감사원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적극행정 지원 제도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사전컨설팅 제도」에서는 제도의 개념, 도입 배경, 컨설팅 대상 및 신청·처리 절차와 함께 감사원에서 실시한 사전컨설팅 사례와 자체감사기구의 대상 업무 분야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장. 「적극행정면책 제도」에서는 제도의 개념, 면책 기준 및 신청·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업무의 적극적 처리 등 면책 기준별로 인정·불인정된 구체적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였으며,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면책사례도 대상 업무 분야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을 통해 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취지와 운영 절차, 기준 등을 보다 잘 이해하고 나아가 적극행정·소신행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좋은 사례들을 모아서 향후 사례집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발간사
책 구성

01

제1장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

1. 추진 배경 ... 10
2.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 11
 - 1) 사전컨설팅 제도 ... 11
 - 2) 적극행정면책 제도 ... 11
 - 3) 모범사례 포상 제도 ... 12
 - 4)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개선 감사 실시 ... 13
 - 5) 교육 및 홍보 ... 13

02

제2장

사전컨설팅 제도

제1절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 17

1. 사전컨설팅 제도란? ... 18
2. 제도 도입 배경 ... 20

제2절 사전컨설팅 대상 및 신청·처리절차 ... 23

1. 사전컨설팅의 신청주체 및 대상 업무 ... 24
2. 사전컨설팅 수행절차 ... 25
 - 1) 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 ... 25
 - 2) 사전컨설팅 처리 ... 26
3.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과의 연계 ... 27

[참고] 쉽게 따라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 29

[참고] 쉽게 따라하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내 사전컨설팅 실적 입력·검색 ... 32



CONTENTS

제3절 사전컨설팅 사례 ... 35

1.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36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 55
 - 1) 인·허가 분야 ... 56
 - 2) 토지·개발 분야 ... 69
 - 3) 환경 분야 ... 79
 - 4) 계약 분야 ... 85
 - 5) 기타 분야 ... 92

03

제3장

적극행정면책 제도

제1절 적극행정면책 제도 개요 ... 99

1.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 100
2. 연혁 및 운영 실적 ... 101
3. 최근의 주요 개선내용 ... 102

제2절 면책 기준 및 신청·처리절차 ... 105

1.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 106
2.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절차 ... 108
 - 1) 감사원 감사의 경우 ... 108
 - (1) 현장면책 ... 109
 - (2) 신청에 의한 면책 ... 111
 - 2) 자체감사의 경우 ... 114

[참고] 쉽게 따라하는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신청 ... 116

제3절 면책사례 ... 119

1. 감사원: 면책 기준별 인정·불인정 사례 ... 120
 -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 121
 -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 145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167
 - (1)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167
 - (2)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유무 ... 179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사례 ... 200
 - 1) 계약 분야 ... 201
 - 2) 시설·재산관리 분야 ... 219
 - 3) 예산집행 분야 ... 229
 - 4) 교육·복지 분야 ... 235

| 참고자료 |

1.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서식 ... 244
2. 현장면책 검토요청 서식 ... 245
3. 적극행정면책 신청 서식 ... 246
4. 적극행정지원 제도 관련 법규 ... 249

국민을 웃게하는 힘!

적극행정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1장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

1. 추진 배경

2.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 (1) 사전컨설팅 제도
- (2) 적극행정면책 제도
- (3) 모범사례 포상 제도
- (4)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개선 감사 실시
- (5) 교육 및 홍보

제1장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

1. 추진 배경

복잡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정책추진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법·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공직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사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높아져 공직자들이 창의적·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행적·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면책
제도 도입 등
적극행정 풍토를
위해 지속 노력

이에 감사원은 2009년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 2월 이를 법제화 하였으며, 2015년 9월 적극행정면책 등 소명신청사항에 대해 외부 법률전문가(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위촉)가 소명인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지원하는 ‘감사권의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적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소극적
행태가 지속되어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등 다각적
노력 추진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지속 여부, 실효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여전히 감사를 의식하여 관행적·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8년 2월 “적극행정지원을 위한 감사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을 전담하는 상설조직인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하고

2019년부터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감사부작용 해소와 적극적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1) 사전컨설팅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는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직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감사원이 함께
고민

일선 행정기관들이 법령의 해석·적용 또는 사업 추진과정에 판단이 어렵거나 감사를 의식해 적극적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전에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월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감사원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제도 도입 배경, 운영실적 등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설명

2) 적극행정면책 제도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제도 도입
이후 자문위 구성,
현장면책 도입,
면책기준 완화 등
활성화방안 지속
추진

이 제도는 2009년 1월 당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하였고, 2015년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시행 근거를 마련한 후 계속 운영해 왔으나 동 제도에 대한 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

위원회’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면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면책 여부를 감사현장에서 바로 결정하는 ‘현장면책’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할 수 있도록 면책기준을 완화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면책하도록 하였습니다.

※ 도입 배경, 연혁, 운영실적 및 주요 개선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설명

3) 모범사례 포상 제도

모범사례를 발굴
하여 포상하고
이를 널리 전파 중

모범사례 포상 제도는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국민 편익과 행정 능력을 높이는데 앞장서는 모범공직자와 모범부서·기관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1982년부터 국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높이는 데 앞장선 모범공직자와 모범기관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으나, 그간 발굴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2018년 7월 ‘모범사례 발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이후 감사원에서 발굴한 모범사례를 유형화하여 모범사례 발굴·조사 시 참고하도록 자체감사기구에 배포하였고, 자체감사기구로부터 모범사례 후보를 추천받아 관련 감사를 통해 점검한 후 포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범사례 추천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의 ‘모범사례 추천’ 게시판을 통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로 선정된 공직자·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상급기관장·당해기관장 표창 및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굴된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매년 또는 격년으로 모범사례집으로 발간하여 널리 전파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발굴된 모범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그간 선정된 모범사례는 감사원 홈페이지(모범사례 ▶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사례)에서 확인 가능

4)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개선 감사 실시

감사원은 선례답습·소극행정·불공정관행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상시 청취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9년 2월 전국 6개 권역별 거점도시(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기업활동의 불편·부담을 청취하여 해결하는 한편, 규제 개선 감사를 추진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업무담당자의 소극적 행위 등 기업 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폭넓게 제보받아 ‘기업 불편·부담 현장점검반’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개선이나 업종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사항 등은 감사부서와 협력하여 실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는 등 소극행정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소극행정이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제 개선을 위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규제감사에서는 기업인 면담,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규제사례를 수집하여 산업·경제활동에 직결되는 개선요구사항, 개선이 시급하지만 소극행정으로 개선이 더딘 사항 등을 발굴,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교육 및 홍보

감사원은 각종 사례집 및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여 일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고, 순회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풍토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도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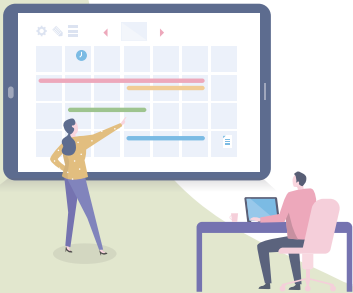
먼저 2018년 7월에는 면책 신청 또는 면책 인정여부 검토 시 구체적인 판단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감사원에서 처리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사항의 인정·불인정 사례를 분석·유형화한 「적극행정면책 사례집」을 발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설문조사 실시 결과) 계약분야에 대하여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실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발간·배포하였습니다.

※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및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는 감사원 홈페이지(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 제도▶사례집)와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일선 공직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최근 개선된 면책심의프로세스와 새로 도입된 사전컨설팅 제도를 소개하고 최신 면책·컨설팅 사례를 설명하는 등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장

사전컨설팅 제도

제1절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1. 사전컨설팅 제도란?
2. 제도 도입 배경

제2절 사전컨설팅 대상 및 신청·처리절차

1. 사전컨설팅의 신청주체 및 대상 업무
2. 사전컨설팅 수행절차
3.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과의 연계

제3절 사전컨설팅 사례

1.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1절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1. 사전컨설팅 제도란?
2. 제도 도입 배경

제1절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1. 사전컨설팅 제도란?

감사원은 '19년 1월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자체감사기구가 사전에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제도로, 감사원은 2019년 1월 사전컨설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15년
법제화 후 점차
확대

감사원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자체감사기구에서 운영 중이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검토를 요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제도로 2014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15년 「공공감사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 된 후 17개 광역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2개 중앙 부처로 확대되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 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별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도입 현황〉

'14년	'15년			'16년	
경기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남	서울	인천
	충북	경남	경북	대전	강원
	울산	부산	전남	세종	대구
	전북	광주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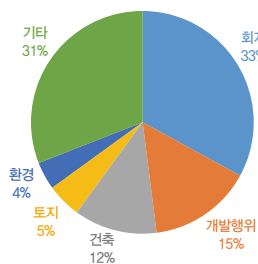
그런데 감사원에서 2018년 7월 각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대·복잡하거나 제도·규정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에서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워 문제 해결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일선 기관에서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현황('14~'18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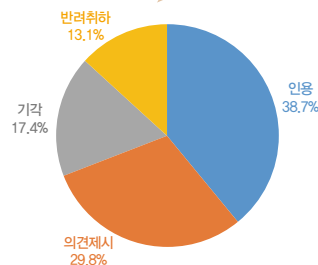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단, 감사연구원)에서 각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회신내용을 분석('18. 8~10월)

- (신청·접수 분야) 회계 관련 사항(33%) 및 개발행위, 건축, 토지 등의 인·허가 사항(32%)에 신청이 집중
- (의견 회신 형태) 신청의 내용대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인용”(38.7%)이 가장 큰 비중, 새로운 업무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제시”(29.8%) 및 신청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리는 “기각”(17.4%),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반려·취하”(13.1%)의 형태로 회신

신청·접수 분야



의견 회신 형태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는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

이에 자체감사기구에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안의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감사원에서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주고자 도입한 제도가 바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입니다.

즉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수행하는 자체감사활동인 사전컨설팅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며, “사전컨설팅감사”가 아닌 “사전컨설팅”으로 명명한 것은 감사원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감사활동과는 다른 지원활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도 도입 배경

감사원은 국가 발전의 한 축인 공직사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여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09년부터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면책제도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불안감 여전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해석이나 운영과정에서 기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공직자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공직자들의 의사결정을 사전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공직자가

느끼는 불확실성 및 감사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를 처리하기 전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택이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자체감사기구의 판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그동안 일선기관으로서 감수해야 했던 리스크를 감사원이 함께 분담하게 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선 기관의
리스크를
감사원이 함께
부담하여 적극적
업무처리 유도

감사원은 2019년 2월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사항”을 통해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사실을 공표하였고 현재까지 사전컨설팅을 해 오면서 공직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2절 사전컨설팅 대상 및 신청·처리절차

1. 사전컨설팅의 신청주체 및 대상 업무

2. 사전컨설팅 수행절차

1) 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

2) 사전컨설팅 처리

3.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과의 연계

[참고] 쉽게 따라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참고] 쉽게 따라하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내 사전컨설팅 실적 입력 · 검색

제2절 사전컨설팅 대상 및 신청·처리절차

1. 사전컨설팅의 신청주체 및 대상 업무

사전컨설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이
신청 가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중앙행정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활동인 사전컨설팅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므로 신청주체는 현재 사전컨설팅감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입니다.

만약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광역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야 합니다.

사전컨설팅 대상
업무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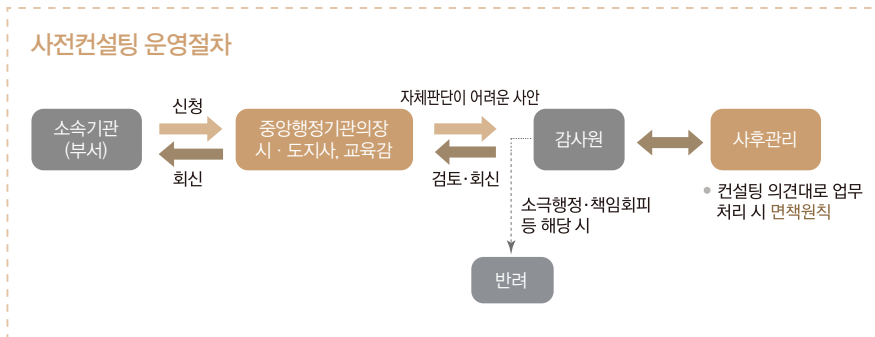
그리고 사전컨설팅 대상이 되는 업무는 행정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되, 자체감사 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 업무에 도움을 준다는 제도의 목적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안’으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 자체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성의한 신청 등 특정한 경우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 신청 제한대상

-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 회피수단으로 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관이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2. 사전컨설팅 수행절차



1) 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

먼저 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 감사원에 컨설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은 ‘사전컨설팅 신청서’(참고자료 1)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장 명의 공문을
감사원에 송부

신청서에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사유 및 관련 증빙·근거법령·해당 사업의 세부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특히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기 전 자체감사기구에서 확인 및 점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목적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쳤는데도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지원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충분한 고민이나 검토과정 없이 단순히 감사원에 일반적인 업무 처리 방향을 질의하거나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사전컨설팅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신청이 접수될 경우 반려 처리 됩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반려 사례

- A교육청에서 대회 참가자격이 없는 학교장의 자녀가 참가단과 동행하면서 사용한 학교발전 기금(식비 및 간식비)을 학교장의 향응수수로 보아 징계시효 5년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 기집행된 사항이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부적합(반려)
- B부에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한 벌칙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경과' 여부를 고발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
→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여부 및 고발기준 적용은 행정청이 일정한 내재적 한계 내에서 처리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부적합(반려)
- C부는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예산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예산운용지침」 등에 따라 C부의 검토·심의에 의해 처리할 사항에 해당하고, 절차 또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부적합(반려)

②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이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 기관장의 명의로 감사원에 송부하면 적극행정지원담당관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사전컨설팅 처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요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서면검토, 관계 기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전 컨설팅 사안 검토

① (사전컨설팅 실시) 서면검토를 기본으로 사전컨설팅 사안을 검토하되, 필요 시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하는 등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법령 소관 중앙부처 및 관련 감사 부서의 의견 청취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큰 사안은 자문위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검토

②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 운영) 사전컨설팅 신청사항 중 대국민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는 등 그 중요도가 큰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에는 감사원 내부위원 뿐만 아니라 법률·행정·기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외부위원도 참여하여 컨설팅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합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 개요

- [위원회 구성]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감사원장이 사전컨설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자 중 컨설팅 건과 관련한 전문가로 지정된 외부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기능]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신청 사안이 다수 부처와 관계되어 있고 관계부처 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 개최
-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필요 시 개최, 매 회의에 5명 이상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참여
 - 지정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③ (컨설팅 의견 통보)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면 검토 내용 및 최종 의견을 담은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60일 이내)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위 의견서를 송부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토 완료 후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
하여 신청기관에
송부

3.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과의 연계

컨설팅 신청기관이 감사원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후 감사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 의견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시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뿐만 아니라 자체감사기구에서 실시한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책 추정하도록 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이 있을 때에는
면책 적용 제외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때 적극행정면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안의 「동일성」, 「충분성」, 「사적인 이해관계의 배제」입니다.

사전컨설팅에 따른 업무 수행시 적극행정면책 판단 기준

- ① (동일성)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 ② (충분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는지
- ③ (사적인 이해관계의 배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지

참고 쉽게 따라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1. 감사원 홈페이지에 접속(www.bai.go.kr) → 하단의 [사전컨설팅 및 법령해석·답변 제도] 배너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Korea Audit and Inspection Service (BAI). The header includes the BAI logo and name in Korean and English, along with navigation links for Home, Site Map, E-learning, and English. A main navigation bar contains links for Notices, Audit Results, Materials, Audit Request Center, Request for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Propos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Agency Introduction.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a building and a stone inscribed with '감사원'. To the right of the banner is a section titled '감사원, 이라크 및 쿠르드 자치정부 감사원 감...' with a photo of a meeting and a brief description. Below this is a list of recent news items. A sidebar on the right contains a search bar and a grid of service icons: 통합검색, 보도자료, 보도해명, 간행물, and 결산감사보고. The bottom section includes several banners for various services: 감사원 소식지, 견학프로그램, 감사제보하기, 바쁜 감사 신문고, 계산증영자료 제출, 감사자료 제출, 적극행정만행 등 감사소명제도, 사전컨설팅 및 법령해석·답변 제도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and 모범사례 추천.

2. 사전컨설팅 맨 아래에 “사전컨설팅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감사원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국민의 나라
정신으로 통치할 권력

HOME | 사이트맵 | 여림이마달 | ENGLISH



[알림](#)
[감사결과](#)
[자료실](#)
[감사제도센터](#)
[심사제실의청구](#)
[참여와 제안](#)
[정보공개](#)
[기관소개](#)

**사전컨설팅 및 감사원
법령해석·답변제도**

사전컨설팅

회계관련법령의
해석·답변

감사원 소관법령의
해석·답변

사전컨설팅



1.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개념

사전컨설팅은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사적 이해관계 존재)이 없으면 민책가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주의 등 책임을 묻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민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멸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2. 신청주제-대상 및 절차

- (1) 신청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사도의 교육감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소속기관 등은 먼저 소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소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부서장이 검토를 한 후 감사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컨설팅 대상**

소속기관(부서)이 자체감사기구에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

 - ①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속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③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무당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 (3) 신청방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주제 명의로 '사전컨설팅 신청서(첨부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담당관)에 송부합니다.
- (4) 검토 및 결과회신**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담당관)에서는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중요사안의 경우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침)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자문위원회의 논의 시 60일)에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노력합니다.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 연장 가능
- (5)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사전컨설팅 이행결과를 작성하여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담당관)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기관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전컨설팅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011-2736(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 사전컨설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컨설팅 신청서

3. 신청서 작성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 명의로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접수

○○광역시교육청

수신 감사원장(적극행정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사전컨설팅 신청서 제출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17(2019.1.14.)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전컨설팅 신청서(○○광역시교육청) 1부.
2. 첨부자료 4부. 끝.

○○광역시교육감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관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

참고 쉽게 따라하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내 사전컨설팅 실적 입력 · 검색

- 감사원에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사전컨설팅 게시판을 구축하였습니다.
- 각 자체감사기구가 기 수행한 사전컨설팅 수행실적을 등록하고, 개별사례를 검색(키워드 등) ·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향후 유사사항에 대한 일관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게시판을 활발하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컨설팅 실적 입력 방법 ▼

1.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gonggam.go.kr) 접속 후 “자체감사” – “사전컨설팅” 메뉴 – 입력

The screenshot shows the '공공감사정보시스템 v1.1/IA' interface. On the left is a sidebar menu with '자체감사' (Self-audit) expanded, showing '사전컨설팅' (Pre-audit Consultation) as an option. The main area displays the '사전컨설팅' page with search filters and a table of records. The '입력' (Input) button is circled in red.

NO	기관명	분류	제목	첨부파일
6	감사원	기타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특약등기 관련	
5	간사원	회계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구매 관련	
4		기타	'내 민권투자자 해수물장 운영 가능여부(2019-3)	
3	감사원	토지	OO 도유지 수의계약 및 종합대박 수첩 관련 사항	
2	감사원	회계	유치원 교사시설 임대 수의계약 관련	
1		환경	통합허가보완서류(고형연료사용허가증빙서류)등 적법성 검토요청(201	

2. 입력 화면에서 제목, 내용(요약)을 기재한 후 신청서 및 회신의견서를 첨부 (첨부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처리)

The screenshot shows the '사전컨설팅 입력' (Pre-consultation Input) form. A modal window titled '사전컨설팅 입력' is open, allowing the user to enter details for a pre-consultation request. The form includes fields for '기관명' (Institution Name), '작성자' (Author), '분류' (Category), '연도' (Year), '제목' (Title), '내용' (Content), '신청서 첨부파일' (Application Form Attachment), and '회신 첨부파일' (Response Attachment). The '분류' dropdown is set to '전체' (All), and the '연도' is set to '2019-04-01'.

▼ 사전컨설팅 실적 검색 방법 ▼

① 실시기관 ② 제목·내용, ③ 업무분류(회계, 개발행위, 건축, 토지, 환경, 기타)로 사전컨설팅 실적을 검색 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사전컨설팅 실적 검색' (Pre-consultation Performance Search) screen. The search criteria are highlighted with red circles and numbers: ① '실시기관' (Implementing Institution), ② '제목' (Title) and '내용' (Content), and ③ '분류' (Category). The search results table is displayed below the search criteria.

NO	기관명	분류	제목	첨부파일
5	감사원	기타	일반대상을 파악하거나 알려주는 경우 특약등기 관련	첨부
5	감사원	회계	인터넷시비해결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구매 관련	첨부
4	감사원	기타	내부 민간투자자 매수출장 운영 가능여부(2019-3)	첨부
3	감사원	토지	OO 도유지 수익계약 및 종합대역 수일 관련 사항	첨부
2	감사원	회계	유치원 교사시급 임대 수익계약 관련	첨부
1	감사원	환경	[매가보완서류(교향면토사들용허가증서류)]등 적법성 검토요청(201	첨부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3절 사전컨설팅 사례

1.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 1) 인 · 허가 분야
 - 2) 토지 · 개발 분야
 - 3) 환경 분야
 - 4) 계약 분야
 - 5) 기타 분야

1.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이후 2019년 4월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검토를 완료하여 신청기관에 회신한 사전컨설팅 사례를 수록하여 감사원의 컨설팅 검토의견 도출과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는 컨설팅 신청 배경, 신청 요지,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및 의견, 기대 효과로 나누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구매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시설 임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3] 농경지 대부·매각계약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 매각·양여 특약등기에 관한 사항

[5] 지자체 출연기관의 설계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6] 전망시설의 법적 성격 및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설계용역에 관한 사항

1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구매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부는 그간 관할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소모성 물품을 구매해온 방식에 비효율 (출장에 따른 업무부담, 취급품목 제한, 유통비용 발생 등)이 발생한다고 판단

- 이에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 오프라인매장이 아닌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직접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고민
- 그러나 전체 기관의 소모성 물품구매에 지출되는 1년 예산(관서운영경비 중 일반 수용비)이 상당 규모여서 충분한 검토 없이 구매방식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기에는 사후 감사 등이 우려되는 상황
- 소모성 물품구매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 과목은 관서운영비이므로, 관서운영경비 지출시 온라인 구매방식을 활용하여도 법령상 저촉됨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신청
요지

-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소모성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 「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검토 결과 및 의견

-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인터넷사이버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미 인터넷사이버몰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 중
- 따라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기만 한다면 인터넷사이버몰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

의
견

인터넷사이버몰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

기대
효과

- 사전컨설팅을 통해 관서운영경비 지출의 적법성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감사불안 없이 효율적인 구매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
- 물품 구매를 위해 출장을 가야하는 등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물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

2 유치원 시설 임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공단이 소유한 건축물 및 토지를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B유치원의 설립자가 2017년 7월 사망함에 따라

-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하도록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B유치원이 폐원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
- 이에 B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해당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2018년 1월 직접 유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B유치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 2018년 11월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건축물 및 토지 등을 활용하여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B유치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격 구비

- B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이 A공단 소유의 기존 유치원 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

신청 요지

- A공단 소유의 기존 유치원 시설(교사 및 교지)을 학부모로 구성된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에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의계약 가능요건인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 주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검토 결과 및 의견

-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과의 임대차계약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수의계약 사유인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인지 살펴보면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주무부처인 C부는 임대 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며 유아를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
- 그리고 컨설팅 검토 당시인 2019년 1월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은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이 유일
-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상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가능

의견

A공단은 학부모로 구성된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과 공단 소유의 기존 유치원 시설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가능

기대 효과

- A공단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B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과 유치원시설 임대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3월 B유치원 개원인가 완료
-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컨설팅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유치원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 내 혼란을 방지

3 농경지 대부·매각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도 소유 농경지(간척지·폐천부지)의 관리주체인 B시는 2006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1만㎡ 초과 농경지의 대부는 일반입찰에 의해야 하는데도 기존 경작농민들에게 1만㎡ 초과 농경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

- 이후 2017년 12월부터는 대부방식을 변경하여 대부기간이 만료한 농경지(1.1만㎡) 1건에 대해 일반입찰 실시
- 일반입찰 실시 결과 타 지역주민이 낙찰을 받게 되자 기존 대부농민들(대부면적 74만㎡)이 일반입찰 유예 및 분할 후 수의 대부·매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
-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1만㎡ 초과 농경지의 대부만기 시점이 도래



신청
요지

- ① 대부 농경지의 토지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기 예정인 1만㎡초과 농지의 대부계약을 202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는지, ② 농경지의 지적을 현황에 맞게 분할·합병한 후 대부·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시행 전부터 대부받아 경작해 온 농경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 「A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227호, 2005. 12. 30. 제정] 제4호(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



검토 결과 및 의견

- ①번 질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1만㎡ 이하 농경지만이 수의 대부의 대상이 됨
 - 대부기간이 도래한 농경지의 경우 1만㎡를 초과하며, 수의 대부 대상이 아님
- ②번 질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농경지의 분할·합병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바, 지적현황에 따른 분할·합병 및 대부·매각은 가능
 - 다만, 단지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농경지의 지적을 현황과 달리 분할하거나 연접한 농경지(1만㎡ 초과)를 동일인에게 수의 대부·매각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

- ③번 질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상 특례(부칙 제4호)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 전부터 농경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경작한 자에게는 수의계약 제한 사유(1만㎡ 초과)에도 불구하고 면적에 상관없이 수의매각이 가능
 - 따라서 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1만㎡ 초과 농경지도 수의매각 가능

의견

1만㎡ 초과 농경지의 대부기간을 수의계약으로 갱신하는 것은 불가, 지적 현황을 고려한 농경지 분할·합병 후 대부·매각은 가능, 특례규정의 요건 충족시 1만㎡를 초과하는 농경지의 수의매각 가능

기대 효과

- 대부계약 기득권을 주장하는 집단민원으로 농경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A도와 B시에 합리적인 처리방향 제시
- 또한 장기간 농지를 대부받아 경작해 온 농민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농경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합법적인 민원해소에 도움을 제공

4 일반재산 매각·양여 특약등기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광역시 B구청은 A광역시로부터 노후 건물을 이전받아 철거한 후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2018년 9월 이전 받는 건물이 소재한 토지는 매각*을, 건물은 무상양여**를 요청

* 매각: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하는 방식

** 양여: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

- 그러나 양여 후 기존 건물 철거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양여재산의 실체가 소멸되므로 양여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게 되고

-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필수 절차인 특약등기*에 따라 건물 양여계약이 해제되는 문제 발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에 따르면 공공용으로 필요시 일반재산 양여 가능, 단 10년 이내 양여 목적 외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 절차 필수

- 이에 A광역시는 토지와 건물이 불가분의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토지” 매각시 특약등기할 경우 건물 매각 혹은 양여시에도 특약등기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

신청 요지

- A광역시가 B구청에 토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토지”에 대해서만 공공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하면서 용도 외 사용 시 매각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특약등기하고, “건물”은 특약등기 없이 매각 또는 양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양여),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검토 결과 및 의견

-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만 그 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는 특약등기를 하도록 규정
- 따라서 일반재산 매각시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 그 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는 특약등기 필수
 -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약등기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물을 특약등기 없이 매각하는 것은 가능

- 한편, 용도를 정하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매각”과는 달리 “양여”의 경우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유권 이전이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 용도로 사용시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는 필수 절차에 해당
- 따라서 기존 건물을 특약등기 없이 양여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반하므로 불가능

의견

A광역시 소유 토지를 주민센터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고 특약등기하여 매각할 경우, 동 토지상의 건물을 특약등기 없이 매각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약등기 없이 양여하는 것은 불가

기대 효과

- 일반재산의 소유권 이전방식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A광역시 및 B구청에 법적으로 가능한 처리방향을 신속히 제시
- B구청은 적절한 주민센터 확장이전 부지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공사 착공

5 지자체 출연기관의 설계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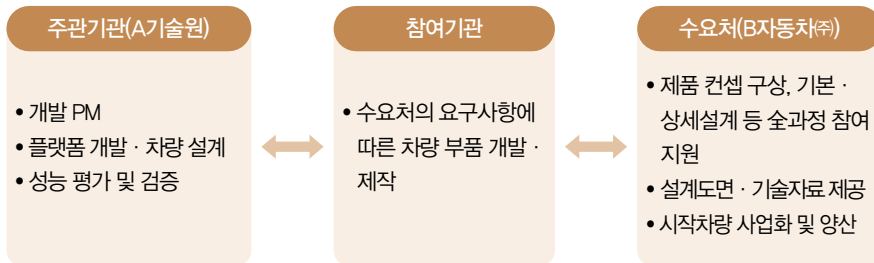
신청 배경

재단법인 A기술원은 국비지원 차량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수요처인 B자동차(주)로부터 상용차 기본설계도면 등을 제공받아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추진

* C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 그런데 A기술원이 2019년 1월 개발차량 설계용역 계약(2건, 총 계약금액 5.7억 원)을 발주하기 위해 B자동차(주)에 설계업체 추천을 요청하자
- B자동차(주)는 유사과제 개발경험, 기술자료 보안 유지 등을 사유로 D설계업체 1개만을 추천

〈수행기관 등의 주요 업무〉



신청 요지

- A기술원이 “유사과제 개발경험” 등을 사유로 B자동차(주)가 추천한 D설계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검토 결과 및 의견

- 이 건 연구개발사업은 기존 상용차(트럭)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민군겸용 다목적 전술차량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 상용차를 생산하는 수요처로부터 설계도면 및 기술 지원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한데,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국내 트럭 생산업체 중 참여를 희망한 업체는 B자동차(주) 유일

- 또한 수요처인 B자동차(주)는 설계도면 · 기술자료 제공, 부품 개발 · 제작, 평가 등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기술 및 전문인력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참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주관기관, 수요처, 설계용역 업체 간 협력관계가 중요한 특수성이 존재
- 또한 B자동차(주)로부터 설계도면 등을 제공받지 못하면 위 연구개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B자동차(주)가 유사과제 개발 경험 · 기술보안 유지 등을 사유로 D설계업체만을 추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설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

의
견

이 건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에 따른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 · 품질이나 경험이 필요한 설계용역계약”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

기대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책지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A기술원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도움을 제공

전망시설의 법적 성격 및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부지 내 전망시설 설치 추진

- 그런데 A시는 위 전망시설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순구조물로 판단하여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 B도는 위 전망시설이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4층 이상의 건축물 등은 설치가 제한된다고 주장

신청 요지

- A시가 설치 추진 중인 전망시설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순구조물인지와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및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검토 결과 및 의견

- 「건축법」 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형공작물에 대해서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건 전망시설은 최상부 전망데크 및 전망데크로 이동하기 위한 데크경사로로 이루어진 시설 (높이 49m, 총중량 451톤)로서
-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하므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에 해당하고
- 눈 · 비를 차단하기 위한 지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자치단체도 유사관망시설을 공작물로 설치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건축물이 아닌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
-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76조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경우 자연녹지지역에는 4층 이하의 공작물만 설치 가능하므로 설치 제한

의
견

이 건 전망시설은 토지에 정착된 12층 상당의 철골구조로서 「건축법」 상 건축물이 아닌 축조신고대상 공작물로 보이며
 - 공작물로 설치 시, 다중이용시설이고 높이가 49m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별도대책 마련 필요
 -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7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는 설치 제한

기대
효과

- 전망시설의 법적 성격에 대해 A시와 B도 간 이견이 있어 관련규정 해석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
- 공작물로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어 안전사고 발생 예방

7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설계용역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교육청은 설계공모(제안공모)를 거쳐 학교건물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018년 5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접주민 민원 제기에 따라 공사를 중단

- 건물 구조·배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과 협의한 후 2019년 2월 학교건물을 다시 설계하기로 결정

신청 요지

- A교육청이 설계용역계약을 다시 발주하는데 있어서 ①기존 설계용역업체와 수의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②설계공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검토 결과 및 의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한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그러나 위 규정은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
- 이 건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용역을 다시 하려는 것
이므로 수의계약 불가
- 그리고 이미 기존 설계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설계변경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설계공모를
다시 거쳐야 함

의
견

이 건 설계용역을 다시 발주할 때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모방식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대
효과

- 사정변경에 따라 재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기관에 계약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2014년 경기도에서 최초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다른 지자체 및 중앙부처로 점차 확산되어 현재 총 19개 기관이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자체감사 대상기관(부서)은 관련 법령·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중앙정부 또는 시·도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고, 자체감사기구는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사례집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간 여러 자체감사기구에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하며 축적해 온 사례를 공유하고자 주요 사례를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인·허가, 토지·개발, 환경, 계약 등 업무 유형별로 분류·정리하여 유사한 사항 발생 시 다른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체감사기구의 업무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 감사 사례〉

업무유형	주요 사례
인·허가	- 도시공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도로가 아닌 길에 「사도법」에 따른 사도 연결 기준에 관한 사항 - 초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에 관한 사항
토지·개발	- 군계획시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용지 개발에 관한 사항 - 소유자 소재지 불명인 사정토지의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환경	- 타 지자체에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사항 -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계약	- 소방항공기 부품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문화시설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 민간위탁 시설의 수익손실분 보전에 관한 사항 - 종합복지센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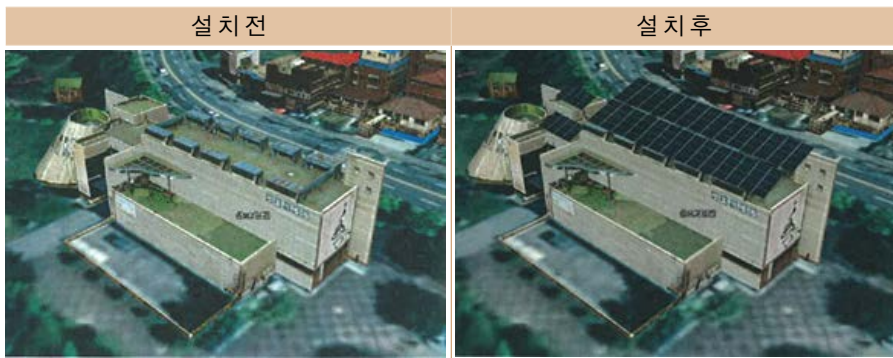
인 · 허 가 분 야

1 도시공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시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조합(사회적기업)은 B시 도시공원 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

- 그런데 B시 공원 관리부서인 녹지에너지과는 A조합이 발전소 설치를 통해 전기 생산, 판매, 잉여금 배당을 하는 등 조합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따라 공원 내 영리목적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 회신
- 이에 B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판단할 때 법령상 목적인 ‘공공의 복리증진’을 이유로 ‘영리목적’ 시설은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자 상급기관인 C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A조합이 도시공원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발전소시설이 '영리목적' 시설에 해당하면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검토 결과 및 의견

- 도시공원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며
-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 점용허가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기준(도시공원의 미관 및 기능, 점용 목적물의 구조안전, 내구성 확보 등)과 대상별 세부기준을 규정
- 이 때 세부기준에 영리 목적이거나 수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 만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영리목적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위 법에 규정된 모든 허가에 적용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사무소·축사·골프장 등도 기준에 맞으면 허가 가능
- 따라서 점용허가 대상여부는 허가의 세부기준에 따라야 하며 ‘공공복리’ 등 추상적인 내용을 근거로 영리 목적의 시설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의견

태양에너지설비의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의 세부적인 기준과 요건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영리목적시설이라는 이유로 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기대 효과

- 법령을 확대해석하여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던 상황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처리, 인·허가 상대방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

2 도로가 아닌 길에 「사도법」에 따른 사도 연결 기준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시에 소재한 B업체는 40여 년 전부터 공장진입로로 사용하는 현향도로의 토지 소유자가 수시로 통행을 차단·방해하자 우회진입을 위한 사도 개설 추진

- 그러나 개설하려는 우회진입로의 도로 폭 등이 「사도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 A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제12조의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급기관인 C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기업규제완화법」 제12조의 특례를 적용하여 개설하려는 우회진입로가 「사도법」 제5조 등에서 정한 사도의 폭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설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관련
법령

- 「기업규제완화법」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 「도로법」 제2조(정의), 「사도법」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차선 및 차도) 등



검토 결과 및 의견

- 「기업규제완화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용지를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私道)로 보아 사도 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기업규제완화법」 제8조에서는 사도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준만 제시할 뿐 “도로가 아닌 길”의 폭이나 길어깨 등 규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 한편 「기업규제완화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다른 법령의 규제 내용이 더 완화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
- 따라서 「기업규제완화법」상 사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을 충족한다면 「사도법」에서 정한 사도의 폭 등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도로 개설허가 가능

의견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개설하려는 우회진입로가 「사도법」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도 개설허가가 가능
 - 다만,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사도 개설허가를 함에 있어 본문의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길”에 대해서는 구조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로 검토함이 바람직함

기대
효과

- 사도 개설 허가를 통해 공장부지로의 우회진입로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업 활동 보장

3 초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군은 2017년 12월 민원인이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초지전용신고를 하자 이를 수리

- 그런데 민원인이 2018년 1월 초지전용 목적사업을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초지(목장용지)를 ‘전’으로 지목변경하고, 2018년 2월 같은 필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 A군은 민원인에 대해 2018년 5월 초지전용신고 목적 위반 등으로 초지전용신고를 취소하고 관련 부서에 지목변경 정정 등 행정조치 요구
- 그런데 민원인이 초지전용신고가 취소된 동일 필지에 다시 농작물 재배목적의 초지 전용신고를 하려 하자 향후 조치에 대해 상급기관인 B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현 장





신청 요지

- 이 건 민원인이 초지전용신고가 취소된 동일 필지에 대하여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다시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검토 결과 및 의견

- 현재 민원인은 A군에 초지전용신고가 취소된 동일필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전기사업허가는 득한 상태
- 관할 중앙행정기관인 C부는 초지 훼손이 예상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초지전용은 불가하다는 의견 제시
- 민원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상태라면 농작물 재배를 위한 초지전용 신고는 동일 필지에서는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추후 민원인이 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초지전용 재신고를 한 경우로 밝혀진다면 초지전용신고 취소 가능

의견

동일 필지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허가(신고)는 할 수 없으며, 추후 본래 목적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밝혀질 경우 취소 가능

기대 효과

-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초지전용신고의 목적과 달리 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초지전용신고가 수리될 수 있었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

4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광역시체육회는 A광역시 소유 체육관 내 승마장을 위탁 운영

-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승마장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하려는 자의 경우 시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
- 한편 위 체육회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내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시설물을 이용한 대상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고 있는 상황
- 이에 관리주체인 B구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위 승마장을 영리목적의 “승마장 업”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상급기관인 A광역시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사용료를 받을 경우 이를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보아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 「A광역시 B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검토 결과 및 의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
- A광역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승마장의 경우 이용료 징수에 따른 잉여금 발생시 개·보수 비용 등으로 적립하고 있고, A광역시가 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위 승마장을 A광역시체육회에서 영리 목적으로 설치·경영하는 체육시설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의
견**

공공체육시설인 위 시설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설치·경영하는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 절차 불필요

**기대
효과**

- 체육시설업 및 신고대상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도움 제공

5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시 관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은 태양광사업을 하고자 토지 내 분묘 18기에 대해서 개장 공고를 하였으나, 그 중 4기는 연고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A시에 이를 무연고 분묘로 보아 개장허가하여 줄 것을 요구

- 이에 A시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연고자를 찾지 못한 분묘 4기는 별초가 되는 등 관리되고 있어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연고자가 있는 상황
- A시는 ‘묘지가 관리되고 있어 연고자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회신을 받았으나
- 위 4기 분묘의 개장허가 가능여부에 대해 최종판단이 어렵자 상급기관인 B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연고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에 대한 개장허가 가능 여부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검토 결과 및 의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항별로 연고자에 직접 통보나 공고 등 적법절차를 진행하고 신청자별로 제출 가능한 증빙을 제출하면 확인 후 개장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 또한 판례상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없더라도 분묘설치 후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한 경우에 발생하며
-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분묘기지권 발생 근거 및 현재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스스로 권리를 보호해야 함

의
견

토지소유자가 통보나 공고 등 적법절차를 진행하고 제출 가능한 증빙을 제출하면 확인 후 개장허가 가능. 다만,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방안을 강구 · 시행할 것을 권고

기대
효과

-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연고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에 대한 개장허가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토 지 · 개 발 분 야

1 군계획시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인 A업체는 시설 설치공사 지연으로 준공예정일(18. 3. 11.)의 변경(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실정

- B군에서는 공사의 완료를 위해 A업체의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12. 3. 12.)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므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상급기관인 C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군계획시설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소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검토 결과 및 의견

- 군 계획시설을 기간 안에 준공하지 못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법령으로 정하는 연장사유(천재지변, 소송 진행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기는 하나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는 행정청의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누려온 기득권 및 신뢰보호 등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 행정청은 그 동안의 사업추진 과정, 사업추진 의지, 법 위반 경위, 사업자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여부에 의한 이익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
- 특히 이 건 공사의 공정율은 60% 이상으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판단

**의
견**

본 건의 경우 사업계획 취소시 상대방이 받게 될 금전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필요

**기대
효과**

- 행정청의 재량사항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불이익을 예방하였고 군계획시설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2 초등학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들은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초등학교의 학교용지에 대해 사업시행자별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하였고, 위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

- 한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들은 학교용지의 토지소유자인 종중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중 내부 문제로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
- 또한 대상 토지의 85%가 종중 소유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요건(대상 토지 2/3 이상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여 토지 수용 방식도 불가
- 이에 B시는 사업자 등과 예산 등에 관해 협약을 한 후, 직접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수용 절차를 거쳐 학교용지를 조성하는 방법의 적법성에 대해 상급기관인 C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A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제안자 및 학교용지의 부담 주체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있는 상황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및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및 제4조(학교 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검토 결과 및 의견

- 「국토계획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주민은 도시관리계획(A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용지)의 시행자로 지정 가능

- 그러나 위 규정은 입안 제안자만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님
-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자 지정 요건에 대해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 외의 다른 주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의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학교용지를 직접 조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능

기대 효과

- 토지소유자(중증)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간의 토지이전 문제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사업(학교용지)의 해결방안을 제시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용지 개발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군 소재 B지구 단독주택용지 소유자들은 사업시행자인 C건설이 2014년 11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을 최종 준공하고도 단독주택용지는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미시행하자 직접 건축할 수 있는지 민원 제기

- 이에 A군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한지와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이 필요한지 대해 법령해석 상 어려움이 있어 상급기관인 D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단지 미조성 시 단지 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소유자가 건축 시 당초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동의 필요 여부

관련
법령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국토이용계획의 결정), 제14조(토지이용 등의 원칙) 및 부칙 제17조(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등)



검토 결과 및 의견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부칙 제17조에 따라 이미 지정된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법 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후에도 승계되므로 단독주택용지 내 토지소유자의 건축을 위한 개발 행위 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을 통해 단독주택용지의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면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행위 허가 가능
- 그리고 군계획시설사업은 2014년 사업준공에 따라 관리청이 A군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건축행위 시 당초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의
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불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며, 당초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불필요

기대
효과

-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방법을 제시함에 따라 장기간 사업 미착수로 인한 민원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개발에 기여

4 소유자 소재지 불명인 사정토지의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시에서 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던 중 해당지역 토지의 (808㎡, 답)의 실경작자라고 주장하는 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신청

- 임차농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은 토지소유자를 통해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지급
- 그러나 위 건의 경우 미등기 사정토지인데다,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재 및 생존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
- 이에 A시는 소유자 소재지 불명인 사정토지를 점유·경작한 자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급기관인 B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소유자 소재지 불명인 사정토지의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경작사실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원부 등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실경작자로 인정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제8조(협의를 절차 및 방법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검토 결과 및 의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경작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경작사실 확인을 통지하고 농지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 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이 건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상 주소불명 및 인적사항이 미기재된 미등기 토지로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황
- 이 때 토지보상 시 공시송달도 법적 효력을 발휘하므로 농지소유주에 대한 경작사실 확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시송달 및 공고의 방법으로 농지소유주 통지의 의무를 한 경우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경작자로 인정 가능

의견

소유자 소재지 불명인 사정토지의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농지소유주에 대한 통지를 대체할 수 있고,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

기대 효과

- 소유자 소재지 불명인 사정토지에 대해 공시송달의 방법을 적용가능 하도록 하고,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손실보상 업무의 효율성 제고

환 경 분 야

1 타 지자체에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인접 타 지자체에 위치한 대형유통매장을 이용하는 A군 주민들이 대형유통매장에 A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를 요구하자, 위 대형유통매장은 2017년 11월 A군에 종량제 봉투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

- A군은 「A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종량제 봉투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장에게 봉투판매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위 대형유통매장이 타 지자체에 소재하여 A군의 관할 읍·면장이 없는 상황에서 봉투판매인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급기관인 B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현 장





신청
요지

- 타 지자체에 소재한 대형유통매장에서 A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판매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Ⅲ-1-마.)



검토 결과 및 의견

- 시장·군수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징수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대형유통매장 등이 소재한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의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고
-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관련 지자체는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따라서 A군은 인근 대형유통매장에 A군 봉투판매인 신고를 처리하는 등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의견

A군 관할 읍·면장에게 쓰레기봉투 판매인신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이므로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A군에서 직접 타 지자체 소재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봉투판매인 신고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

기대 효과

- 내부 규정에 따라 인접 지자체에 소재한 대형유통매장의 봉투판매인 신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쓰레기봉투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

2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2018년 12월 A군 B정수장에서 여과지* 상층 삭취 및 신규 여과사** 보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폐여과사 65톤 발생

* 응집·침전 등 전처리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물질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제거하는 시설

** 여과 장치에 쓰이는 모래

- 발생한 폐여과사는 공정중 약품 주입이 없는 고품질 여과사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
- 2019년 6월 A군에서는 B정수장 전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모래건조상 설치시 위 폐여과사를 전량 재활용하고자 하나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보관기간(90일) 제한이 있는 상황
- 그러나 폐여과사를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위탁처리비 등*이 별도로 발생

* 90일 이내 위탁처리 시 위탁처리비 및 추가 모래 구입비(2,600만 원)

-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이 가능한 지에 대해 상급기관인 C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예산 절감을 위하여 폐기물을 재활용시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기간(90일 초과)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검토 결과 및 의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보관의 경우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보관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연장승인이 가능
- 폐여과사 성분 분석 결과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유형에 해당되며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예산절감을 위하여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함이 타당
-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승인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시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도 환경오염 여부, 주민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간 보관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의견

사업장폐기물 보관기간 연장가능 여부에 대하여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예산절감을 위한 장기간 보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활용 시점까지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승인이 가능

기대효과

-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하여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을 인정함으로써 적극행정 실현
- 폐여과사 보관기간 연장 승인을 통하여 재활용 될 경우 자원 낭비를 줄이는 한편 폐기물위탁처리비 및 추가 모래구입비 예산(2,600만 원)을 절감

계 약 분 야

1 소방항공기 부품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구조단은 예산절감을 위해 공급자가 교체대상부품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소방항공기 부품구매계약을 추진(5,000만 원 상당 절감 예상)

- 그런데 A구조단 계약담당부서는 위와 같은 구매계약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상 근거가 없음을 사유로 재검토 요청
- 이에 A구조단은 표준재생수리부품과 고장난 기존부품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항공기 부품 구매가 가능한 지에 대해 상급기관인 B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A구조단이 고장난 기존부품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소방항공기 부품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물품계약 일반조건)



검토 결과 및 의견

-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물품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A구조단이 부품 매입 조건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것으로서 고장난 기존 부품은 관련 업체에서 수리·재생 후 판매가 가능
- 따라서 예산 절감 효과가 현저하고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물품계약 특수조건'에 고장난 부품을 업체에서 적정가격에 가져가도록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 등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의
견

교체대상부품 매입하는 조건을 '물품계약 특수조건'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소방항공기 부품 구매계약 체결 추진 가능

기대
효과

- 표준재생수리부품 구매계약(1억 700만 원) 및 교체대상부품 매각계약(1,000만 원)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에 비해 교체대상부품 매입 조건부 부품구매계약(4,600만 원) 체결 시 5,000만 원 상당 절감 예상

2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지원사업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업체(이하 “참여기업”)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 에너지공단(이하 “공단”)에서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지원,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후 B광역시·A구·공단·참여기업·수요자(주민) 간 사업 추진에 대한 협약을 체결

- 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협약 이외에 별도로 계약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A구는 상급기관인 B광역시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A구가 참여기업과 체결한 협약과는 별도로 업체 선정, 계약심사, 계약서 작성 등의 계약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및 제27조(보급사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계약심사대상 사업)



검토 결과 및 의견

- 본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개경쟁 평가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항임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경쟁에 의한 입찰(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의 행위로서 B광역시·A구·공단·참여기업·수요자(주민)간 체결한 협약을 통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A구와 참여기업간 별도의 계약 체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 다만, 융·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여기업과 별도의 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을 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에 따르면 행정절차를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가공모사업인 이 건 사업은 계약심사 제외 대상일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공사참여자가 이미 결정되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음

**의
견**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공모에 의해 참여기업이 선정되고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는 바, A구가 참여기업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심사 제외 대상임
 — 다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참여기업과 공사계약의 특수조건 등을 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기대
효과**

-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

문화시설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군은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쌀 보관을 위해 사용하던 풍농창고를 그림책미술관 등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계획 수립



- 그런데 공사 추진 과정에서 풍농창고 1동에 대한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1동의 경우 건물노후화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하기 불가능한 상황
- 이에 A군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추가 공사 발주분이 설계변경 대상인지 별도발주 대상인지 불분명하자 상급기관인 B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구분	동별	사업내용
당초	a동	330㎡ 리모델링, 54㎡ 증축
	b동	59㎡ 리모델링, 174㎡ 증축
변경	a동	330㎡ 리모델링, 내진보강공사
	b동	59㎡ 철거, 298㎡ 신축



**신청
요지**

- 추가 발주될 공사(a동 내진보강공사 및 b동 철거 후 신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설계변경의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발주의 대상인지 여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검토 결과 및 의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당초 사업내용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의 변경을 설계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계변경을 통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 발생

의견

a동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내진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기 계약상대자와 설계변경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b동의 경우 사업내용의 일부 변경이 아닌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설계변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더욱이 설계변경으로 추진 시 사실상 기존 업체와의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특혜 제공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제도의 취지대로 별도발주하는 것을 권고

기대
효과

- 설계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약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도움 제공

기 타 분 야

1 민간위탁 시설의 수익손실분 보전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A시는 2018년 11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사업자로 B본부를 선정하여 3년('18. 12월~'21. 12월)간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

* 근로자종합복지관 자체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운영 방식

- 그런데 A시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위 시설의 구조보강을 위한 환경 개선공사를 시행
- 이에 따라 위 공사기간 동안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스포츠센터 영업중단으로 인한 운영손실이 불가피해지자 손실보전 가능 여부에 대해 상급기관인 C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A시가 공유재산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수탁 기관인 B본부에 임대수익 및 운영비 손실 발생분을 A시 예산(민간위탁금)으로 지원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A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비 등), 제17조(다른 규정의 준용)
- 「A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운영지원)



검토 결과 및 의견

- 「A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서 “매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복지관 운영수익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독립채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는 근로복지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운영경비의 충당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 건의 경우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수탁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市 책임의 환경개선 공사 시행)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실(임대수익의 손실, 고정적 인건비 및 공과금 등 운영경비 소요)에 관한 것으로
- 수익손실분으로 인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및 「A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가능

의
견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기대
효과

- 민간위탁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후 감사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추후 발생 가능한 민원을 미연에 예방

2 종합복지센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신청 배경

- A농업협동조합은 2018년 6월경 종합복지센터(창고시설, 소매점 및 휴게 음식점, 금융업소 및 문화 및 집회시설 포함) 신축공사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를 B시에 제출
- 이에 B시는 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A농업협동조합에 부과하기 위해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던 중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해당하는 부과금(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A농업협동조합의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상급기관인 C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



신청 요지

- 관할 지자체는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에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근거하여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련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검토 결과 및 의견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
-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
- 그리고 대법원도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외 부과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그 다른 법령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

의 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법」상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

기대 효과

- 명확한 법령 해석을 통해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 가능한 민원을 미연에 예방

국민을 웃게하는 힘!

적극행정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3장

적극행정면책 제도

제1절 적극행정면책 제도 개요

1.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2. 연혁 및 운영 실적
3. 최근의 주요 개선내용

제2절 면책 기준 및 신청·처리절차

1.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2.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절차

제 3 절 면책사례

1. 감사원: 면책 기준별 인정·불인정 사례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사례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1절 적극행정면책 제도 개요

1.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2. 연혁 및 운영 실적
3. 최근의 주요 개선내용

제1절 적극행정면책 제도 개요

1.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면책제도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감사소명제도’의 하나로, 공직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사소명제도란?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감사결과와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감사결과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함

- 적극행정면책, 사실관계 상이, 새로운 증거, 법령해석 차이, 정상참작 등 소명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 구분하여 접수받아 검토·처리하고 있음

이 제도는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인 실수 등에 대한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원법」 제34조의3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등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직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면책’이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징계·문책·주의요구 등 「감사원법」 등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정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면책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은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포함) 또는 임직원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된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이익한 처분요구’에는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주의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 포함) 등이 있습니다.

2. 연혁 및 운영 실적

감사원은 2009년 1월 당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2015년 2월 적극행정면책에 관한 근거 규정을 「감사원법」에 마련한 후 구체적인 면책 기준, 운영절차 등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09년 제도 도입.
'15년에 법제화

또한, 공공부문의 적극행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유도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자체감사기구 감사의 경우에도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5년 2월과 5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각각 시행 근거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수행 기관도 각각 자체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적극행정면책의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 연혁

- '09. 1월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감사원훈령, '14. 6. 2. 폐지) 제정
- '14. 6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규정」(감사원훈령, '15. 2. 3. 폐지) 제정
- '15. 2. 3. 「감사원법」(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적극행정면책 규정 신설,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정
- '15. 5. 1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 제13조의4) 적극행정면책 기준 및 운영절차 규정 신설
- '18. 2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 발표
- 「적극행정지원단」 신설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설치 등
- '19. 2월 적극적 공직사회조성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과제」 발표
- 기존의 면책 기준 개선 및 사전컨설팅 이행에 따른 면책 기준 신설

한편, 그간 감사원의 면책 제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9년 4월말 현재까지 총 175건에 대하여 적극행정을 사유로 면책하였습니다.

그 중 124건은 감사원이 직권으로 면책한 것이고, 51건은 감사를 받은 공직자 등으로부터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받아 이에 대한 검토 후 면책한 것입니다.

3. 최근의 주요 개선내용

감사원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18년 2월) 및 “적극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과제”(19년 2월)를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신설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감사원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8. 3월부터 면책 여부를 면책자문위에서 심의

이에 따라 2018년 3월 금융, 세무, IT·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 유경험자·법률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1기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한 후 2019년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면책신청사항을 심의하였고, 2019년 3월부터는 2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인 자문위원회 운영 방식은 제2절에서 설명

2) 현장면책 활성화 방안 마련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현장에서 조기에 면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실지감사 기간 중에 대상기관의 면책요청을 받아 「감사마감회의」 시 감사단장이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현장면책’의 세부 기준·절차를 2018년 3월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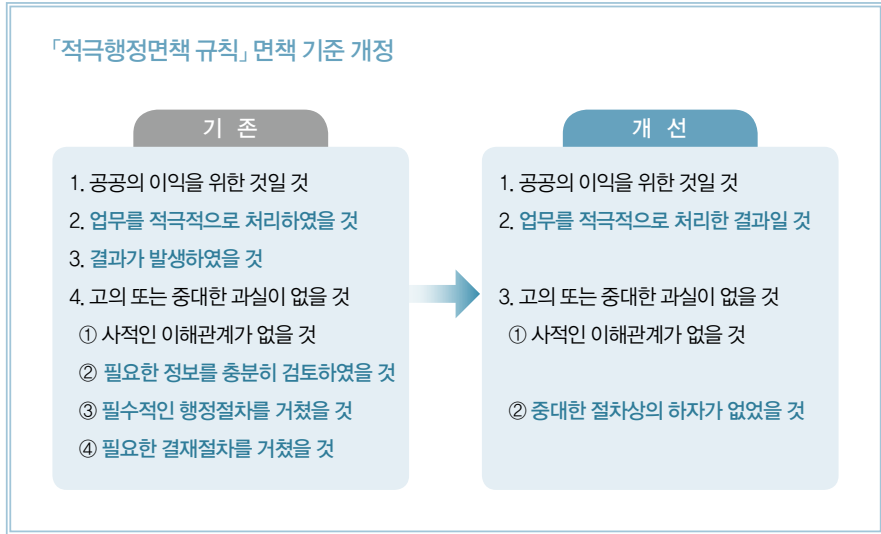
'18. 3월 현장면책 제도 도입

※ 구체적인 현장면책 신청절차·방법은 제2절에서 설명

3) 면책 기준 완화 및 컨설팅 이행 시 면책 기준 신설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할 수 있도록 면책 기준을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18년 12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18. 12월 면책 기준을 완화하고,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항에 대한 면책 기준을 마련



또한, 2018년 12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사후 책임추궁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 판단 기준

-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컨설팅을 받았을 것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구체적인 적극행정면책 기준은 제2절에서 설명

제2절 면책 기준 및 신청·처리절차

1.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2.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절차
 - 1) 감사원 감사의 경우
 - (1) 현장면책
 - (2) 신청에 의한 면책
 - 2) 자체감사의 경우
- [참고] 쉽게 따라하는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신청

제2절 면책 기준 및 신청·처리절차

1.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면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익성, 적극성,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적극행정면책 기준

「감사원법」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의 지적대상 행위가 공익성과 적극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행위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②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사적인 이해관계 등)가 없는 한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따라서 적극행정면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기준별 충족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첫째,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담당하

업무자체(예: 관련 규정·사무분장 상 업무, 지시사항 이행 등)가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처리한 방법·방식(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행위)의 의도 및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고려합니다.

둘째, ‘**업무의 적극적 처리**’란 공익을 위해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을 시도하거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능동적·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했거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셋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추정하는 요건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① ‘**사적인 이해관계 여부**’는 감사 시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직접 수혜의 대상이 되거나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 개입이나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배임, 사기, 편취 등 범죄행위가 연관된 경우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고려됩니다.

②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는 불가피한 사유 등에 의해 경미한 절차나 사소한 결재 과정이 누락된 경우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상 중대한 절차를 누락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 판단기준

감사원 및 자체감사기구에서 수행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에 따라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사후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항은
사안이 동일하고
정보제공을
충분히 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
가 없어야 면책
기준 충족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책 검토 사안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사안과 동일하지 않거나 사전컨설팅 의견과 달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 검토 사안’과 ‘사전컨설팅 사안’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사전컨설팅 신청기관·부서에서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 의견 도출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중요 사실을 왜곡·은폐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충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 판단기준

- (사안의 동일성)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 (정보제공의 충분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는지
- (사적인 이해관계)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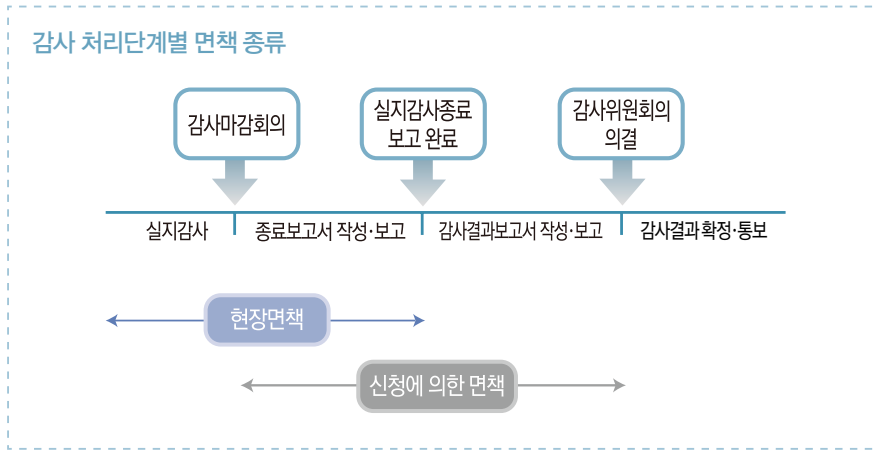
2.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절차

1) 감사원 감사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 이후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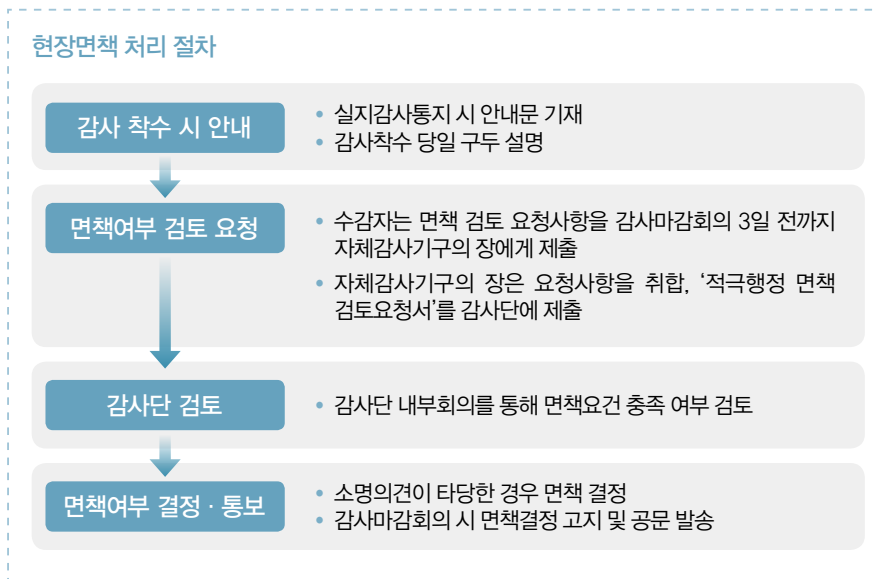
적극행정면책은 감사 실시·처리단계에 따라, 감사 착수 후 감사현장(실지감사)에서 감사단에 면책 검토를 요청하는 ‘**현장면책**’과 감사현장에서의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원 내 적극행정지원단에 면책을 신청하는 ‘**신청에 의한 면책**’으로 구분됩니다.

감사처리단계에 따라 ‘**현장면책**’과 ‘**신청에 의한 면책**’으로 구분



(1) 현장면책

먼저 실지감사 기간 중 ‘현장면책’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사 착수 시 안내)** 감사원은 감사 착수 전 ‘현장면책’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 실시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고, 감사 착수 당일에는 자체감사

현장면책 방법·
절차를 감사 착수
시 안내

기구의 장에게 ‘현장면책’의 방법·절차 등을 구두로 설명합니다.

실지감사 실시통지서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문

-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 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단장에게 마감회의 3일 전까지 적극행정면책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지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는 마감회의
3일 전까지 면책
여부 검토요청
사항을 자체 감사
기구의 장에게 제출

② **(면책 여부 검토요청)**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위해 수행한 업무 중 감사현장(실지감사)에서 감사자가 책임 여부를 조사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i) ‘감사자가 조사하는 사항의 요지’, ii) ‘적극행정면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유’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 감사마감회의(감사단장이 실지감사 시 지적된 내용과 처리 방향 등에 대해 감사 대상기관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제출된 면책 검토요청 사항을 취합하여 ‘적극행정면책 검토 요청서’를 작성,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감사단에 제출합니다. (참고자료 2) “현장면책 검토요청 서식” 참조)

감사단은 면책
충족 여부 검토

③ **(감사단 검토)** 감사단장은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면책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별도 검토요청이 없더라도 감사단 자체적으로 ‘면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항’도 현장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사실을
마감회의 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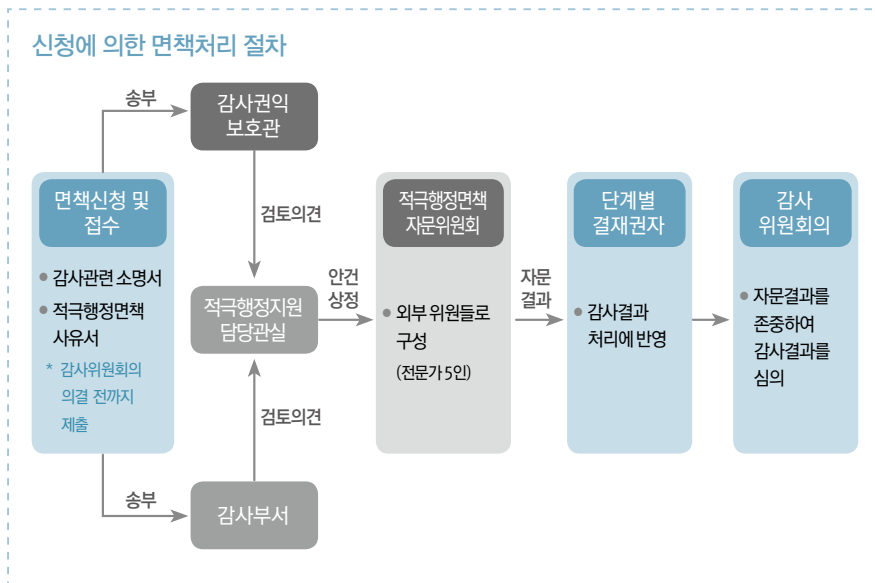
④ **(면책여부 결정·통보)** 감사단 내부회의 결과 소명의견이 타당하다는데 이견이 없어 감사단장이 면책을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마감회의 시에 감사단장이 면책결정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며 이후에 면책결정 사실을 공문으로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합니다.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감사마감회의 전까지 면책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항은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처리단계에서 면책 여부를 계속 검토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처리단계에서 면책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 즉시 감사를 받은 기관에 면책 결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현장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추후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가능(“(2) 신청에 의한 면책” 참고)하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감사단이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 감사결과보고서 결재과정에서 적극행정면책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를 받은 경우 면책 여부를 직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에 의한 면책

신청에 의한 면책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면책신청·접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관련 공무원이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인적사항을 기재한 ‘**감사 관련 소명서**’와 소명서의 별첨 서식으로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를 함께 작성하여 감사원 내 적극행정지원단(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3] “적극행정면책 신청 서식” 참조)

면책 신청사항은
권익보호관과 감사
부서 검토를 거쳐
면책자문위에 상정

면책사유서를 작성하여 적극 행정지원단에 면책신청 가능

면책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향후 진행절차와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감사원 홈페이지(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진행상태 조회)에서 검토 단계별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책신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의결하기 전까지 가능하나 사실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감사권익보호관 및 감사부서 검토) 적극행정지원담당관은 접수한 면책 신청서를 감사권익보호관과 해당 감사부서에 이송하여 각각의 검토 의견을 취합한 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단, 비밀 등 보안을 요하는 면책신청 사항인 경우에는 감사권익보호관의 검토와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란?

- 감사원은 2015년 9월 '감사원 외부시각'에서 소명인을 대변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지원하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감사권익보호관(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위촉)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지적 내용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異見)을 제출하는 경우 소명인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관련 안건이 감사위원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인의 입장을 대변·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감사권익보호관은 소명인에게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명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실에서 감사권익보호관과 면담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감사원 감사 시 지적을 받게 되었으나 자신의 업무처리가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신다면,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권익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처리한 여러분의 소명 내용이 감사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공익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주저해서는 안 되고 이런 관점에서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우리 공직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권익보호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③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검토)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상정된 면책신청 안건을 객관적으로 심의합니다.

면책자문위에서
면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요

- [위원회 구성]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률·행정·기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감사원장이 30인 이내(위원장 포함) 위촉, 임기 1년(연임 가능)
- [위원회 기능] 적극행정면책신청 사건이 면책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자문하며, 감사원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
-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 매 회의에 위촉위원 중 관련 전문가 5명 참여
 - 지정된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논의 결과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

④ (단계별 결재권자 검토) 자문위원회의가 끝나면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은 자문 결과가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진행단계별 결재권자 또는 주심 감사위원(주심 감사위원 검토 단계에서 면책신청이 접수된 경우)에게 자문결과를 송부합니다.

⑤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감사결과를 심의합니다.

면책자문위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감사결과 처리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받아 면책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신청인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면책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면책 사유를 인정하여 감정한 경우 포함)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갈음합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해당 감사에서 면책이 신청되었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 지적 요지와 인정 여부 등을 포함한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개요표’를 작성·기술하고, 각 면책 검토사항별로 개별처리안에 신청인의 면책신청 내용과 각 면책 기준별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검토 결과를 기재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은 불가능하나, 확정된 처분요구 등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사실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제도란?

- 감사원의 처분요구 등이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경우 개인의 재산상 또는 신분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수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
 - 재심의 청구는 처분요구서 접수 이후 1개월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청구 가능(단, 변상판정은 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
-

2) 자체감사의 경우

자체감사의 경우에도 면책 신청이 가능하며 면책 여부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을 받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와 처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면책의 요건을 검토하여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위와 같이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도 알려야 합니다.

그 밖에 세부 절차는 자체감사 수행기관이 각각 자체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적극행정면책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기구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현황

- 감사원에서는 '19. 2~3월 13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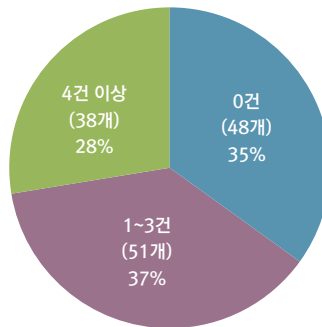
* 중앙행정기관 37, 광역지자체 17, 교육지자체 16, 공기업 30, 준정부기관 22, 금융연계금 15

- 조사결과 : 최근 3년간 137개 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서 총 791건의 적극행정면책을 신청·접수, 그 중 618건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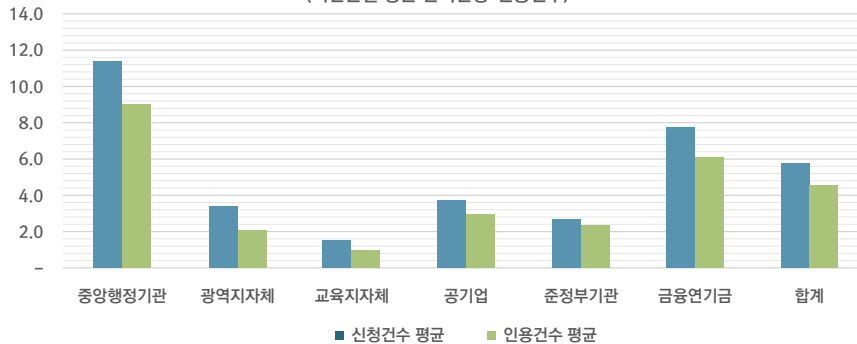
– 신청 건수가 0건인 기관은 48개, 1~3건인 기관은 51개이고, 4건 이상인 기관은 38개

– 전체 기관 평균 신청 건수는 5.8건이고, 평균 인용 건수는 4.5건

〈신청건별 기관수〉



〈기관군별 평균 면책신청·인용건수〉



참고 쉽게 따라하는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신청

1. 감사원 홈페이지에 접속(www.bai.go.kr) > 하단의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배너

감사원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HOME | 사이트맵 | 어린이마당 | ENGLISH

알림 | **감사결과** | **자료실** | **감사제보센터** | **심사제심의청구** | **참여와 제안** | **정보공개** | **기관소개**

인사발령 감사원, 기업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위한 「기 ...

감사원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소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 광주사무소를 시작으로 서울시 감사원 ...

- 최재형 감사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2019-02-13
- 김상규 감사위원,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 ... 2019-02-08
- 최재형 감사원장, 사회복지시설 방문 2019-01-29

전체	입법예고	재용	인사	보도해명	교육	+
인사	인사발령(2019. 3. 13)					2019-03-13
보도해명	제3차 ASOSAI-EUROSAI(아시아-유럽 감사 ...					2019-03-10
인사	인사발령(2019. 3. 6)					2019-03-06
보도해명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 보도 참고 자료					2019-02-27
인사	인사발령(2019. 2. 20)					2019-02-22

I 감사결과와 공개 및 검색

기타	세월호 인양 관련 선체조사위원회 감사...	2019-03-12
기타	학교행사 사고에 대한 경복교육청의 부...	2019-03-11
기타	경기도교육청 기관운영감사	2019-03-07
재정	서울시 기초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	2019-03-06

통합검색 **검색**

보도자료 **보도 해명** **간행물** **결산감사보고**

감사원 소식지
감사지는 감사원에서 발행하는 국민용 소식지입니다.

견학프로그램
감사원에서는 청소년, 성인 등 국민을 위해서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보하기
감사원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보를 온라인으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른 감사 신문고 **계산증명자료 제출** **감사자료 제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사전컨설팅 및 법령해석 답변 제도** **모범사례 추천**

2. 제도소개 맨 아래에 “소명서” 및 “사유서” 등 서식 다운로드

감사원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HOME | 사이트맵 | 어린이마당 | ENGLISH

알림 | 감사결과 | 자료실 | 감사제보센터 | 심사제심의청구 | 참여와 제안 | 정보공개 | 기관소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제도소개 | 사례집 | 모범사례 | 진행상태 조회

제도소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에 대한 개요와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4. 감사권익보호관제도

감사권익보호관제도는 감사원의 감사지적 내용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소명인(감사와 감사를 받는 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소명자료를 검토·지원하는 제도로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하여 '15. 9. 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권익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소명인에게 연락하여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명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실(감사원 2별관 1층 소제)에서 감사권익보호관과 면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권익보호관은 관련 헌법이 감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에 배석하여 자유롭게 소명인의 입장을 대변·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011-2736(적극행정지원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다운로드](#)

[감사 관련 소명서](#)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감사 관련 명단신청서](#) [적극행정면책 검토요청서 \(행정면책 신청서 작성\)](#)

3. 소명서 및 사유서 작성 후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주소: 03050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2,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 적극행정면책담당자 앞

4.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 조회

감사원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HOME | 사이트맵 | 어린이마당 | ENGLISH

알림 | 감사결과 | 자료실 | 감사제보센터 | 심사제심의청구 | 참여와 제안 | 정보공개 | 기관소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제도소개 | 사례집 | 모범사례 | 진행상태 조회

진행상태 조회하기

감사원으로 접수한 소명사항의 진행상태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확인

신청자명

관리번호

연도선택 - 구분선택

* SMS로 전송된 관리번호를 입력하세요.

[진행상태 조회하기](#)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3절 면책사례

1. 감사원: 면책 기준별 인정·불인정 사례
 -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1)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2)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유무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사례
 - 1) 계약 분야
 - 2) 시설·재산관리 분야
 - 3) 예산집행 분야
 - 4) 교육·복지 분야

1. 감사원: 면책 기준별 인정·불인정 사례

2009년 면책제도 시행 이후 2019년 4월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검토·심의를 완료한 적극 행정면책 사례를 분석하여 아래 표와 같이 면책 기준별로 인정·불인정 사유를 유형화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사례는 지적내용, 신청 취지 및 인정 여부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면책 기준		인 정	불 인 정
공공의 이익		- 경제 활성화 도모 - 예산 누수 방지 도모 - 공공기관의 수익 창출 도모	-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행위 - 기존보다 공익성이 저하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 당초 계획한 공공의 이익 달성이 곤란
업무의 적극적 처리		- 문제점 개선을 위해 새로운 방식 시도 - 시급한 문제의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 -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 검토 미흡 등 적극성 부재 - 업무 소홀 등 무사안일적 행태 -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없이 업무를 처리
고 의 · 중 과 실 이 없 을 것	사적인 이해관계	감사결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 개입, 알선 · 청탁 등 행위와 연관 - 금품 · 향응수수, 횡령, 배임, 사기, 편취 등 범죄행위와 연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 · 자문을 거친 후 업무처리 - 내부 규정에 따른 결재절차 준수 - 절차위반은 있었으나 해당 절차의 목적 · 취지에 위배되지 않고 치유 가능한 경우	- 변경 공고 등 중대한 절차 누락 - 유관부처 협의 등 필요한 절차 누락 - 결재 또는 승인절차 등을 누락 -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축소 · 은폐 · 기망 · 누락하여 보고

참고사항

본 사례집은 면책 검토 ·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면책 인정 · 불인정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하더라도 각 사안별 구체적 상황 및 업무처리 방식 · 과정 등에 따라 면책 검토 결과가 달리 도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 인정 사례의 지적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본 사례집을 일선 행정현장의 업무매뉴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인정된 사례

[1] 경제활성화를 도모한 경우

- ①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납을 허용
- ② 사업비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수익매각 추진
- ③ 투자유치를 위해 공업용지를 매각하면서 환매권 행사 시 시가로 하도록 계약

[2] 예산 누수 방지를 도모한 경우

- 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산정·지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② 신속한 지방 이전을 위해 낙찰 포기각서만 징구한 채 후순위업체와 계약체결

[3] 공공기관의 수익 창출을 도모한 경우

- ① 기업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단 사전승인 없이 수주한 계약을 사후 승인

불인정된 사례

[1] 특정인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성 행위인 경우

- ①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협의 기간을 연장하고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
- ②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집행

[2] 기존 업무처리방식보다 공익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① 사유재산 보호 등을 사유로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배되는 건축을 허가

[3] 당초 계획한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데도 추진한 경우

- ① 주민 동의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변경
- ② 사권이 설정되어 학교부지로 사용 불가능한 토지매입

인정된 사례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1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경우

1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납을 허용

지적 내용

A군에서 산지 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를 의제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 A군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부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허용

신청 취지

-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고
-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레저시설 등)로 이용객을 유치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한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부득이 분납을 허용함



인정여부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낙후지역에 이용객 등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에게 대체산림 자원조성비의 분납을 허용한 것이므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2

사업비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수익매각 추진

지적
내용

A군에서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시행사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는 추첨방식으로 매각하고, 준주거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A군은 시행사가 공동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를 수익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후 다시 계약금액을 감정가액 이하로 감액하고 4차례 분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사업수익 악화를 초래



신청
취지

- 이 건 산업단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기간 추진해온 사업으로, 시행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를 매입 보상한 후 산업용지 분양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선행조건으로 분양률 25%를 달성할 것을 요구받아 상당 토지를 수익매각 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음
- 또한, 이후 수익계약 상대방이 계약금액 감액 및 분납을 요청하였고,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동의함



인정여부



-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될 경우 공장 등 유치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사업비를 대출받기 위해 수익매각과 계약금액 감액 및 분납에 동의한 것이므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3

투자유치를 위해 공업용지를 매각하면서 환매권 행사 시 시가로 하도록 계약

지적 내용

A도에서 기업 입지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에 첨단우량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공업용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 이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면 공업용지 매각 이후 업체가 직접 공장 설립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 「민법」 제590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매계약 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공업용지 매각 이후 계약상대자가 직접 공장 설립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과 그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공업용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
- 그런데 A도는 환매권 행사가격을 계약금액과 그 매매비용이 아닌 공인감정평가 기관이 산출한 시세 가격으로 하는 조건으로 B업체와 계약을 체결
- 그 결과 B업체가 부지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제3자에 매각하기 위해 가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데도 지가 상승으로 인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

신청 취지

- 낙후된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유치하고자 부지매각을 추진하였으나
- 대상 부지가 기반시설 부족으로 공장입지에 불리하여 계약체결에 어려움이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환매가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요구조건을 수용함



인정여부



- 부지 매각을 통해 공장이 유치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대상 부지의 입지가 불리하여 매각 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 대자의 요구조건을 수용한 것이므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2 예산 누수 방지를 도모한 경우

1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산정·지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적 내용

A부 과장 ○○○ 등 3명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 구매카드 발급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 카드사가 유가보조금 산정·지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경우 또는 LPG를 구매·사용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따라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카드사가 '경유구매카드 결제 내역은 실제 구매 유종과 관계없이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유종을 추정'하는 등 실제 주유 유종을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도 카드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방치
- 그 결과 실제 주유한 유종에 상관없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감사기간 중 유류구매카드의 결제내역을 확인한 결과 LPG 충전소에서 경유카드를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가 발견됨



신청 취지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내역을 전산화하고 유가보조금 산정·지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고
- 이로 인해 사후 적발이 가능하게 되어 부정수급이 차단되었고, 부정수급 담당 공무원의 업무 편의가 개선되는 공익적 효과를 얻음



인정여부



-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부정수급 방지업무 편의가 개선되고 사후 적발을 위한 자료 검증이 가능해져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것은 공익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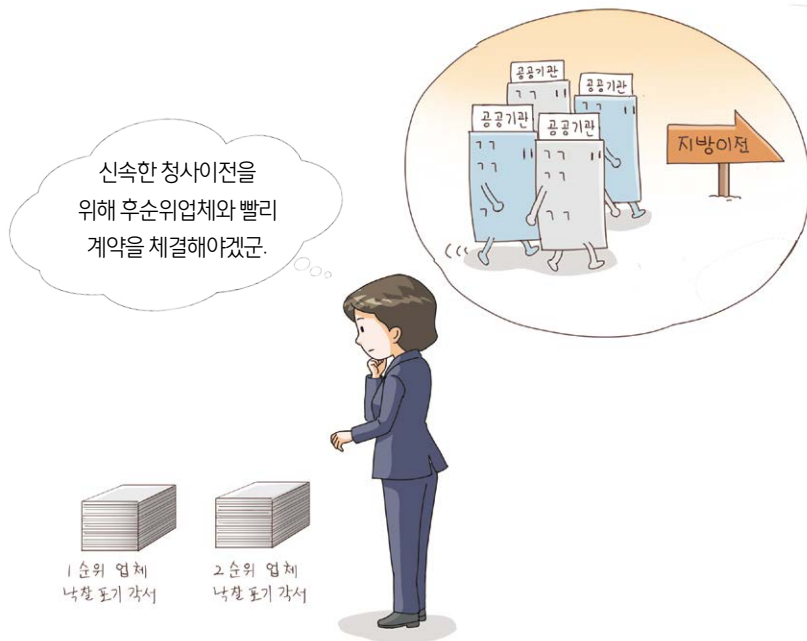
2

신속한 지방 이전을 위해 낙찰 포기각서만 징구한 채 후순위업체와 계약체결

지적
내용

A원에서 신청사 건립공사에 필요한 외장판넬 등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추진하면서

- 「판로지원법」 등에 따르면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1, 2순위 업체가 “자체심사 결과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것 같다”고 하자 해당 업체들의 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낙찰 포기각서’만 징구한 채 후순위인 B업체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한 후 B업체와 계약체결



신청 취지

- 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이 분명한 1, 2순위 업체의 심사서류를 모두 검토하여 관급자재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 경우 추가 공사비 발생 및 이주 직원의 입주 시기 관련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이에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선순위업체로부터 낙찰 포기각서를 징구받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음



인정여부



- 구매계약을 신속히 진행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추가 이전비용 발생 및 이주시기 지연에 따른 직원들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개인주의”에서 “기관주의”로 감경됨



공공기관의 수익 창출을 도모한 경우

1

기업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단 사전승인 없이 수주한 계약을 사후 승인

지적 내용

A은행은 채권단으로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B업체의 수주계약 승인업무를 처리하면서

- 관련 협약에 따르면 B업체가 수주계약 체결에 앞서 A은행에 승인을 요청하면, A은행은 계약의 이행 및 영업이익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 B업체가 수주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자, A은행은 거래 상대방인 선주사의 신용상태나 사업이행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승인
- 그 결과 뒤늦게 선주사의 신용도가 낮은 것을 확인한 후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설계비 등 손실 발생

신청 취지

-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조업 물량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당시 조선업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신규수주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당시 사후 승인을 바로 하지 않을 경우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이 안 되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진행을 위해 일단 승인한 후 선주사의 신용상태 및 사업이행능력에 대해 검토를 진행
- 선주사의 거래신인도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한 후 즉시 계약 이행을 중단시켜 대규모 추가손실을 차단함



인정여부



- 조업 물량이 확보되면 기업회생에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기업회생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 어렵게 수주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을 일단 승인하고, 사후적으로 선주사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공익목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위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 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불인정된 사례

1 특정인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성 행위인 경우

1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협의 기간을 연장하고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

지적 내용

A공사에서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 매입공고 등에 따르면 매입가격은 주거·지역 여건, 준공기간 등을 감안, 위 공사
에서 산정한 등급별 협의 매입률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직상위
등급의 협의매입률 이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매입 협의 기한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가 결렬되는 것으로 규정
- 이에 따라 A공사는 6개 업체와 매입 협의를 진행하여 2개 업체는 협의를 완료
하고 4개 업체와는 협의가 결렬되었는데도
- 협의가 결렬된 4개 업체 중 B업체에 대해서만 협의 기간을 1주일 연장하였고
- 연장된 협의 기한까지도 협의가 안되자 재협의를 진행한 후 매입가격을 직상위
등급의 협의매입률 보다도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아파트를 매입

신청
취지

-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함



1. 심사원 면책기준별 인정·불인정 사례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인정여부



- 이 건 사업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협상 결렬 후 재협상을 하고 매입 가격을 기준보다 높게 적용한 것은 특혜성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익목적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문책 요구함

2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집행

지적
내용

A공단에서 사무실을 이전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집행하면서

- 위 공단의「기부금품 업무처리 지침」등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는 기부금품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기부자와 이해관계(허가, 공사, 용역, 임대)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가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영업수익 이외의 수익은 기타수익으로 계리하고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도
-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단 보조사업 자금 수탁은행인 B은행으로부터 사무실 이전비용을 지원받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집행하였고 위 비용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도 않았음



신청
취지

- 소상공인에 대한 쾌적한 상담환경 조성, 원활한 금융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였고 금융기관 예산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음



인정여부



- 기부금품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공단과 위·수탁 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주의요구함

2 기존 업무처리방식보다 공익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1 사유재산 보호 등을 사유로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배되는 건축을 허가

지적 내용

A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 열거된 경우에만 신축이 가능
- 그런데 A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전(田)과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토지의 소유자가 6건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그대로 허가

※ 해당 토지는 '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대지'였다가 '78년 '전(田)과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나
- '16. 6월 토지 소유자가 한시 허용규정('14~'15년 허가 신청한 건에 한해 적용)에 따라 해당 토지를 29개 필지로 나누어 29개 간이소매점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다시 '대지'로 지목을 변경
- 이후 소매점을 자진 철거하여 위 29개 필지를 6개 필지로 합필한 후 '16. 10월 6개의 근린 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허가처리

신청 취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 주택 등 신축을 허용하지 않아 과도한 규제 논란이 있었고, 이에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한시 허용규정이 제정됨
- 그런데 위 허가신청 토지는 한시 허용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만료 전 조급하게 소규모 가설형태로 허가를 받다 보니 분양이 어렵고 도시미관 저해 및 불법 방치의 우려가 있었으며
- 이에 위 소규모 가설형태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큰 규모의 건축물로 다시 허가하는 것이 사유재산 보호의 측면에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건축을 허가한 것임



인정여부



- 도시의 미관 저해 및 사유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추구되는 「개발제한구역법」상의 공익(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과 그 법률 제정 취지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 요구함



당초 계획한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데도 추진한 경우



1 주민 동의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변경

지적 내용

A시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B지역 및 C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식을 기존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도록 한 후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 처리

*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 관리처분방식: 현물출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을 수용하지 않고 정비 사업을 시행한 후 정산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정비사업의 손실과 수익이 모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사업방식

신청 취지

-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장기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여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하였고
- 사업시행 전까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판단하였음



인정여부



-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음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불문(처분 요구하지 않는 것)함

2

사권이 설정되어 학교부지로 사용 불가능한 토지매입

지적 내용

A교육청은 B고등학교의 교실 증축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학교부지 매입을 추진 하면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는데도
- B고 행정실장 ○○○는 해당 부지에 소유권 매설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작성
- 또한, 이후 A교육청 재무과 세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과(재산팀)에서 지상권 설정 사유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지 않자 지상권을 일시 해지한 후 재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 토지매입에 개입
- 그 결과 매입 부지를 교실 증축 등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산책로 등으로 이용

신청 취지

-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족한 주차장 및 야외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 학교 주변 다른 토지 소유자는 매도 의사가 없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매입 협의가 가능한 토지주를 알아보고 매각 의사를 확인한 후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제출하였음



인정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회피하기 위해 지상권을 일시 말소 후 재설정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였고
- 지상권이 설정되어 매입이 불가능한 송유관 매설토지를 취득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반면, 취득 후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향후 송유관 이설 비용부담까지 발생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함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 요구함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인정된 사례

[1]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경우

- ① 예산확보가 어렵자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대학시설을 확충

[2] 공공의 안전 등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 경우

- ① 시급한 재난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면허관청 협의 전에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
- ②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염병 자가격리 대상을 선정
- ③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다른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 실시

[3] 발생 가능한 손실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 ① 달성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제시한 입찰참가업체에게 보완자료 요청

불인정된 사례

[1] 검토 미흡 등 적극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① 단순 검토 미흡으로 인해 허가대상이 아닌 부지에 개발행위 초래
- ② 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평가 제외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③ 잘못된 재무구조 개선 효과 분석에 따라 자산매각

[2]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무사안일적 행태

- ① 법령 질의회신 및 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3]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없이 업무를 처리

- ① 법령상 매수할 수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매입

인정된 사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1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경우

1 예산확보가 어렵자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대학시설을 확충

지적 내용

A대학교에서 학교 부지 내에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교지 내에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문화회관을 건립하면서 해당 시설에 대규모 판매시설(전체 연면적 54,379㎡ 중 34,003㎡에 쇼핑센터를 설치)을 배치·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신청 취지

- 대학 내 문화·복지·체육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로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국고지원과 대학 자체재원만으로는 시설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 이에 전체 대학 중 최초로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대학시설 확충사업을 계획하였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판매시설을 포함하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 없이 교육 연구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음



인정여부



- 국고지원 및 대학 자체재원으로 대학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라는 그간 대학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해결방안을 도입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의 적극적 처리'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불문(처분 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2 공공의 안전 등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 경우

1 시급한 재난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면허관청 협의 전에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

지적 내용

A군은 관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자 할 때는 면허관청과의 매립 협의 등 매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시·군) ➡ 매립기본계획 고시(해수부) ➡ 매립협의(광역시·도) ➡ 매립실시계획 승인(광역시·도) ➡ 매립공사(시·군) ➡ 매립준공검사(광역시·도) ➡ 매립지 등기(시·군)

- A군은 매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도로를 개설하였고, 미등기 상태에서 위 도로를 사용



신청 취지

- 강풍 및 파도로 인해 노상 구조물이 유실되어 인근 주택이 재난위험에 노출되는 등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였음



인정여부



- 매립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을 일부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재난위험에 노출된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
- ※ 위 사례는 '업무의 적극적 처리'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결정됨

2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염병 자가격리 대상을 선정

지적 내용

A시는 관내 보건소로부터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하였던 메르스 의심환자의 확진 사실을 보고받고

- 감염병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메르스가 전파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후 총회 장소의 CCTV 확인 등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를 분류하지 않은 채
-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전원을 자가격리하겠다고 발표하여 시민 불편 초래



신청 취지

- 당시 총회 장소에 비해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혼잡하였고 투표로 인한 이동이 있어 참석자 간 접촉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메르스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었음
- 이에 참석자 중 밀접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가 회의 및 역학 조사관 자문을 거쳐 참석자 전원을 자가격리조치하기로 함



인정여부



- 메르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던 상황에서 A시 소속 역학 조사관이 1명에 불과해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전문가 회의 및 역학 조사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의 적극적 처리'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결정됨

3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다른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사 실시

지적
내용

A공단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시설의 연결통로에 결로가 발생하여 철도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자

- 이용객 안전상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유로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기 공사 중인 별개의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신청 취지

-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미끄럼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결로 해소 공사를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으나
- 입찰 등 공개경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적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철도 이용객의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어
- 결재권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기 공사 중인 별개의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 결로 해소 공사를 진행함



인정여부



-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재권자에게 공사의 시급성과 입찰에 부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보고한 후 내부방침을 받아 신속하게 결로 해소 공사를 추진하는 등 철도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업무의 적극적 처리'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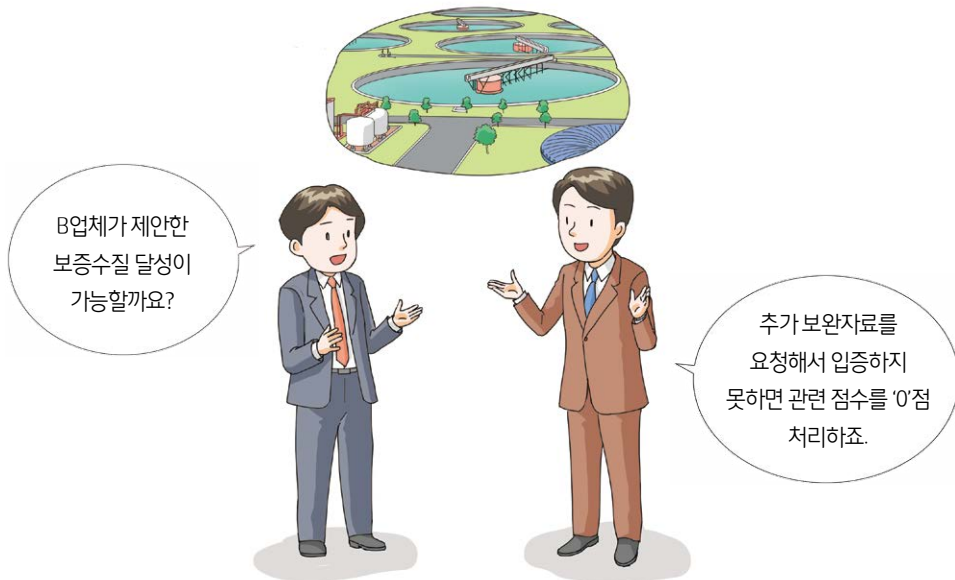
3 발생 가능한 손실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1 달성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제시한 입찰참가업체에게 보완자료 요청

지적 내용

A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3차) 사업자 선정업무를 처리하면서

- 입찰에 참여한 B업체와 C업체 중 B업체에만 보증 수질이 의심된다는 사유로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하였고
- B업체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B업체의 3개 항목 점수(COD, T-N, T-P)를 '0점' 처리하여 C업체가 시행사로 최종 낙찰



신청 취지

- B업체가 제안한 공법으로는 보증 수질 달성 가능 여부가 담보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준공 지연, 손해배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시공사는 입찰 시 제시한 보증 수질을 달성하여야 준공 처리가 가능하며, B업체와 동일한 공법을 제안한 C업체의 경우 B업체와 달리 3차 처리를 거쳐도 3개 항목의 농도(목표 방류 수질)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안서를 제출(BOD, SS 농도만 낮아짐)

- 보증수질 달성 입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업체가 제안한 공법을 그대로 평가·선정하는 것은 향후 기동중단, 재정손실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



인정여부



- 보완자료 요청은 제안업체의 시공능력과 제출 자료의 진실성을 검토해야 하는 공무원의 책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 달성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목표에 대해 근거를 확인하고자 한 것은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해당
 - ※ 위 사례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결정됨

불인정된 사례

1 검토 미흡 등 적극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 단순 검토미흡으로 인해 허가대상이 아닌 부지에 개발행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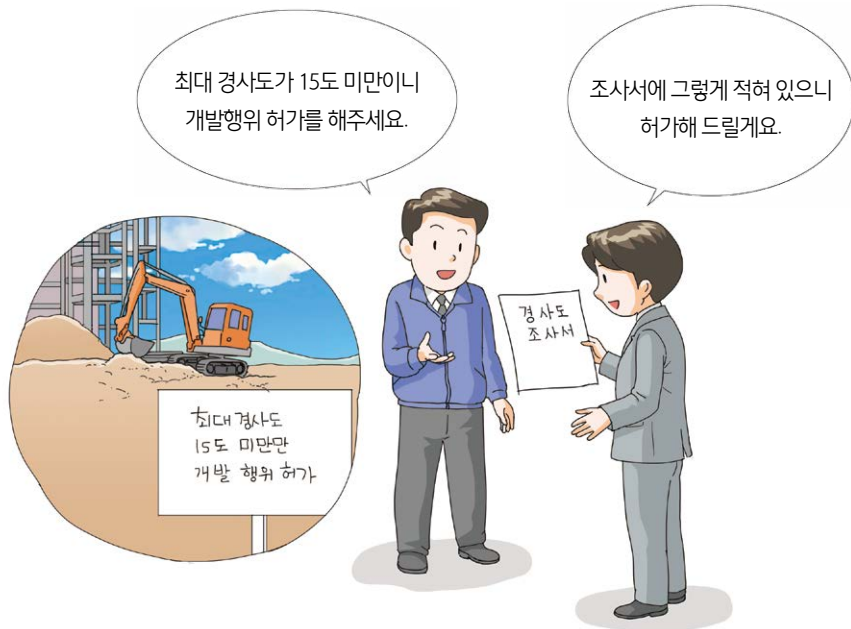
지적 내용

A시에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최대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 경사도 측정 및 산정방식은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대표단면)에서 단면이 등고선에 직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B업체가 제출한 ‘경사도 조사서’에는 최대경사도의 측정 단면이 등고선과 직각이 되도록 설정되지 않았고, 최대경사도(14.92도)가 평균 경사도(16.4도) 보다도 낮게 명시되어 있는 등
-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경사도가 측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B업체가 신청한 개발행위를 허가

신청 취지

- 허가신청 부지의 최대경사도 산정 시 복수의 단면 중 최적 단면을 담당자가 판단하여 대표단면으로 선정하여 측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 현장 확인, 신청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단면 및 최대경사도를 검토하는 등 말은 바 업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음



인정여부



- 신청인이 조례에서 정한 방식과 달리 최대경사도가 과소 산정된 '경사도 조사서'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허가한 것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 단순히 '경사도 조사서'가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처리의 적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 요구함

2

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평가 제외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지적 내용

A시는 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의 낙찰자 선정업무를 처리하면서

- 「공모제안서 작성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제안서 등에 업체 명기 및 유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안신청을 무효로 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도
- 사업제안서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B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업체명이 명기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신청
취지

-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받고 10일간 검토하였으나 업체 별로 그 분량이 500여 쪽에 달해 부속서류에 기재된 업체명 표기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음



인정여부



- 「공모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업체명을 명기한 경우 제안신청서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이상 제출서류에 업체명이 명기되어 있는지 면밀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업무를 처리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책은 불인정 되었으나 소명이 일부 인정되어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3

잘못된 재무구조 개선 효과 분석에 따라 자산매각

지적 내용

A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본사 신사옥을 B자산신탁에 임차조건부로 매각하면서

-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기재부)에 따르면 자산매각 시 자금유입 및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 A공사는 매각 후 발생하는 임차료가 부채 상환 시 이자비용 감소액보다 크므로 자금유출이 더욱 증가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가 재무제표상 부채(금융리스)로 인식되어 부채비율이 오히려 증가하는데도 사장에게 부채비율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후 이사회에 그대로 상정·의결

※ 금융리스: 자산매각 후 법적 제한 등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는 특수한 성격의 자산, 향후 지급할 임차료를 부채로 인식

※ 운용리스: 자산을 빌려 이용하는 대가로 임차료 지급, 향후 지급할 임차료를 부채로 미인식

신청 취지

- 당시 경영악화 상황에서 임대조건부로 사옥을 매각할 경우 해당 거래가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되어 매각 대금으로 기존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재무구조가 개선(부채비율 감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매각하였음



인정여부



- 해당 신사옥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정주 의무가 부여된 특수한 성격의 자산이므로 임대조건부 매각 이후 금융리스로 분류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데도
-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A공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적극적 업무처리로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 요구함

2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무사안일적 형태

1 법령 질의회신 및 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지적 내용

A시가 행정재산인 농산물도매시장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 주무부처로부터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도매시장 밖으로 이전하더라도 도매시장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질의회신을 받았고,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자문을 받고도
- 도매시장관리사무소만 도매시장 밖으로 이전할 경우 도매시장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 도매시장을 민간에 매각



신청
취지

-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유사한 사례를 파악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인정여부



- 주무부처 질의회신, 법무법인 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으므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주의 요구함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없이 업무를 처리

1

법령상 매수할 수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매입

지적 내용

A구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B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해 6필지를 매입하면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 당초 예정부지를 변경하여 사권이 설정된 C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으로 활용도가 낮은 D부지를 소유자의 매도희망가격대로 추가 매입
- 게다가 A구는 사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차장 건립여건에 더욱 적합한 인근 부지의 소유자들이 비슷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했는데도 매매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음
- 그 결과 당초 계획과 비슷한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고도 주차면수는 40면에서 28면으로 줄어들고, 사권이 설정된 부지로 인해 주차장 건립이 지연됨

신청 취지

- 주차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에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부지 매입가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매매 협상으로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전통시장 발전과 이용객의 편의, 인근 주민의 이익 등 공익에 기여함



인정여부



- 공유재산법령상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취득할 수 없는 부지를 매입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였고, 대체 부지가 있었음에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를 매입한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적극적 업무처리로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면책 기준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light gray gradient. At the bottom, there is a decorative pattern of blue triangles of various sizes and shades (light blue, medium blue, and dark blue) arranged in a geometric, overlapping fashion.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인정된 사례

[1] 감사결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정하였으나 사적인 이해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② 지원금 지급대상 검토를 잘못하였으나 사적인 이해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된 사례

[1]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 행위와 연관된 경우

- ①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 ② 직무상 감독 대상인 협회에 특정인에 대한 채용을 요구

[2]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배임, 사기, 편취 등 범죄행위가 연관된 경우

- ①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계약 관련 사례비를 수수

인정된 사례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1 감사결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정하였으나 사적인 이해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적 내용

A공사 팀장 ○○○은 유럽국가에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납부한 배당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 업체선정 절차 진행 도중 B업체에 3일을 기한(국가계약법령 상 10일 기한이 타당)으로 정량평가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업체에 요구한 후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가장 낮은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
- 또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한 뒤에 당초 자신의 정성평가점수가 잘못 되었다는 사유로 점수를 조정하여 당초 1위였던 B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였던 C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

신청 취지

- 용역업체 선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업체와 사적으로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 유럽국가에 대한 배당세액 환급신청을 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배당세액 환급신청업무를 창의적으로, 새롭게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협력인력이 없어 원활한 세금환급 업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인정여부



- 배당세액 환급신청 업무는 국내 국가자금 운용기관 중 A공사가 처음 시도하면서 국가와 공사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 해당 업체와의 사적인 친분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았는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위 사례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2

지원금 지급대상 검토를 잘못하였으나 사적인 이해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적 내용

A청 국장 ○○○은 수중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업무를 총괄하면서

-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에 따르면 준설선 및 선별기를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증빙자료(건설기계등록원부, 중기매매계약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골재채취업자는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한편, ○○○국장은 선별기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B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자 부하직원에게 B업체가 선별기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재검토하도록 지시
- 이후 부하직원이 선별기 최초 매입일('09년)보다 양수일('07년)이 빠른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진위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B업체가 선별기 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구조조정 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지시
- 그 결과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B업체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

신청 취지

- 담당 국장으로서 실무자와 중간관리자가 검토하여 보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B업체가 구조조정 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 행정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구조조정 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것으로 B업체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음



인정여부



- 담당 국장으로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해 부하직원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부하직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과정에 부당한 업무지시나 알선·청탁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 관련 업체와의 사적인 친분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았는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 ※ 위 사례에서 국장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주의요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음
 - ◆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실무자들은 면책 기준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주의요구함

불인정된 사례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1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 행위와 연관된 경우

1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지적 내용

A군 계약담당자 ○○○은 농경지 침수방지용 이동식 양수기 구입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 평소 알고 지내던 양수기 납품업자가 찾아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의 명의로 견적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후
- 위 업자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6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계약 관련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자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

신청 취지

- A군은 도서(島嶼)로만 형성되어 있어 재해에 취약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양수기 구매를 추진한 것으로 고의성이나 금품수수 정황이 없으며 업무 미숙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잘못되었음



인정여부



- 계약과정에 금품수수 정황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나, 지인으로부터 계약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특례규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위 사례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2

직무상 감독 대상인 협회에 특정인에 대한 채용을 요구

지적 내용

A부 과장 ○○○은 A부의 직무상 감독 대상인 B협회에 상근부회장직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위 직위에 특정인을 선임하도록 요구

- 또한 ○○○은 A부 선배였던 △△△로부터 자신을 C협회의 사무국장직으로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 협회를 담당하는 A부 팀장에게 채용을 부탁

신청 취지

- 상근부회장으로 특정인을 추천한 것은 B협회의 추천 요청에 따라 A부 내부에서 적임자 선발 과정을 거쳐 추천한 것으로써 B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었음
- ○○○은 △△△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특정인 추천은 협회 임원 등 선임 관련 업무의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소개 후 연락을 취한 적도 없음





인정여부



-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 직무상 감독 대상인 협회로 하여금 지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위 사례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2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배임, 사기, 편취 등 범죄행위가 연관된 경우

1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계약 관련 사례비를 수수

지적 내용

A기술원 책임연구원 ○○○ 등 3명은 연구비 집행·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 실제 구매하지 않는 연구 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구매주문서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에 제출한 후, 업체에 지급된 돈을 되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
- 또한 연구재료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



신청
취지

- 과제 참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를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정부과제의 사업비 불인정 반납비용, 연구원 명절격려금 등 센터공통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선처 요망



인정여부



- 연구비를 횡령하고 계약 관련 사례비를 수수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위 사례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A decorative background pattern consisting of numerous blue triangles of various sizes and shades (light blue, medium blue, and dark blue) scattered across the page. The triangles are arranged in a way that creates a sense of depth and movement, with some appearing to overlap others.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유무

인정된 사례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자문 등을 모두 거친 경우

- 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주식을 할인 매각
- ②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해지

[2] 내부 규정에 따른 결재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 ①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 수익계약 체결
- ② 감리단 검토 및 결재권자 보고 후 설계변경을 승인

[3] 절차위반은 있었으나 해당 절차의 목적·취지에 위배되지 않고 치유 가능한 경우

- ① 세관장 협의없이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을 입주시켰으나 관세는 부과

불인정된 사례

[1] 변경 공고 절차 없이 이미 공고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① 공고된 심사기준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임의 변경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관부처 협의를 누락한 경우

- ① 유관부처 협의를 누락한 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3] 결재 또는 승인절차 등을 누락한 경우

- ① 승인절차 없이 내부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용역업체 직원에게 부여
- ② 지출 관련 서류 확인을 태만히 하여 횡령 사건 발생

[4]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축소·은폐·기망·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 ① 개발 미완료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

인정된 사례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유무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자문 등을 모두 거친 경우

1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주식을 할인 매각

지적 내용

A공사는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매입한 비상장 주식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 매각 공고 시 예정가격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매각주간사로부터 사모펀드가 상장 차익을 기대하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장 후 매도가격 대비 15~20%가량의 수익률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이 수익률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매각가격의 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자
- 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할인율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방침을 받아 정하기로 한 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식의 평가액에서 26.9% 할인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
- 그 결과 비슷한 시기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각



신청 취지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연내 비상장 주식을 매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매각 주간사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격 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이를 검토하였고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법령에 따른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음



인정여부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할인율을 결정 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문책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2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해지

지적 내용

A부(B과)는 기존 ‘재정지원 제한대학평가’(’11~’14년)에 따른 경영부실대학 지정 업무를 2015년 9월 종료하고 2015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하면서

- 기존 경영부실대학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는 경우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저소득층 대상)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
- 그런데 A부(C과)는 2013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D대학교와 F대학교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는데도
- 위 대학들이 기존 ‘재정지원 제한대학평가’에 따른 경영컨설팅 이행과제를 완료했다는 사유로 G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해지를 요청하자
- 경영부실대학 지정 조건부해지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제한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장학금 지원제한을 해지

신청 취지

- 경영부실대학 지정업무를 종료하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 중에서 기존의 협약에 따라 이행과제를 완료한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었고
- 이에 A부와 협약의 믿고 대학이 컨설팅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국가장학금 지원제한도 해지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재학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였음



인정여부



- 대학교가 이행과제를 완료할 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재학생들의 신뢰 보호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이 인정되고
- 「G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제한을 해지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기관 주의요구”로 변경됨

2 내부 규정에 따른 결재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1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 수의계약 체결

지적 내용

A공단은 B회관의 승객용 승강기 성능개선공사를 실시하면서

- 위 공사는 주요 구성품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등 사실상 신규 승강기 제작·설치와 다름이 없어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했는데도
- “부품 호환성”을 사유로 들어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 업체인 C업체와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



신청
취지

- 해당 건물은 준공 후 27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이나 1일 상주 인원 및 내방객이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다중이용시설로, 승강기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 우려되어 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였음
- 위 공사를 성능개선공사로 판단하여 승강기 주요 구성품 중 상태가 양호한 주요 부품은 재사용하고 작동, 기능 및 상태가 불량한 부품 위주로 교체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조달청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인정여부



- 다수의 시민이 해당 건물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요 구성품의 재사용 가능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2

감리단 검토 및 결재권자 보고 후 설계변경을 승인

지적
내용

A공단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계약상대자인 B업체가 제출한 설계 변경 승인업무를 처리하면서

- 위 공사의 입찰안내서 등에 따르면 1일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이 300톤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 B업체가 1일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을 270톤으로 줄이는 대신 기존 벨트프레스식 탈수기를 원심 탈수기로 교체하여 탈수 효율을 높여 이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신청하자
- 책임감리원의 검토를 거쳐 결재권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설계변경을 승인
- 그 결과 당초 설계 처리용량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탈수기 운영비가 7.6~39.3%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신청
취지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실시한 후 감리단의 검토 결과를 결재권자에게 사실대로 보고한 후 설계변경을 승인하였음



인정여부



- 담당자가 책임감리원의 검토를 거쳐 결재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한 후 설계변경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문책요구"에서 "주의 요구"로 감경됨



절차위반은 있었으나 해당 절차의 목적·취지에 위배되지 않고 치유 가능한 경우

1

세관장 협의없이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을 입주시켰으나 관세는 부과

지적 내용

A시는 B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입주를 허가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입주허가 시 ‘양허물품* 취급업종’은 관할 세관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

* 양허물품: 「관세법」 등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이만큼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약속(양허)한 농·임·축산물

- 그런데 A시는 관할 세관장과 협의 절차 없이 양허물품 취급업종을 영위하는 D조합법인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가하여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 임대료의 26%) 및 세제 혜택(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부여



신청 취지

- D조합법인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E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시 사업부지 선정 등과 관련하여 농림부의 협조 요청 공문이 있었고
- 투자유치가 부진하였던 B항 배후단지에 신규 기업 유치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음
- 다만, 양허물품 취급업종의 경우 입주 허가 시 세관장 협의를 필요하다는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세관장 협의를 거치지 못했음



인정여부



- 장기간 미분양상태이던 항만 배후단지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침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관할 세관장 업무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할 세관에 수차례 문의를 하였고 입주기업 심사 시 세관 관계자도 참여하였음
- 또한 해당 업체에 현재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할 세관장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의 취지(관세의 부담 감면·면제 방지)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회복 가능한 하자라고 판단됨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등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징계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결정됨

불인정된 사례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유무

1 변경 공고 절차 없이 이미 공고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공고된 심사기준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임의 변경

지적 내용

A시 팀장 ○○○ 등 2명은 ‘노면 하부 동공탐사 용역계약’의 낙찰자 선정업무를 처리하면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공고를 한 후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도록 규정
- 한편, 용역계약 공고문에 따르면 기술지식 항목(배점 25점)은 3가지 세부항목(동공탐사 테스트 결과 10점, 탐사자료 분석계획 8점, 동공관리방안 수립계획 7점)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는 탐사실적 1개소는 5점, 2개소는 10점을 부여하고, 탐사자료 분석계획과 동공관리방안 수립계획은 정성평가하는 것으로 규정
- 그런데 ○○○ 등 2명은 제안서평가 중 평가위원들로부터 기술지식 항목을 발주기관이 제시한 동공 위치와 각 참여업체가 제시한 동공 위치의 정확성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그 순위대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를 받자
-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면 공고된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한 후 공고 기준과 달리 평가함으로써 낙찰자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



신청 취지

- 이 건 업무를 처리하면서 타당성 심사, 건설기술 심의·일상감사,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협상·계약, 준공 처리 등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음

인정여부



- 공고된 심사기준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재공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하였는 바 법령상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관부처 협의를 누락한 경우

1 유관부처 협의를 누락한 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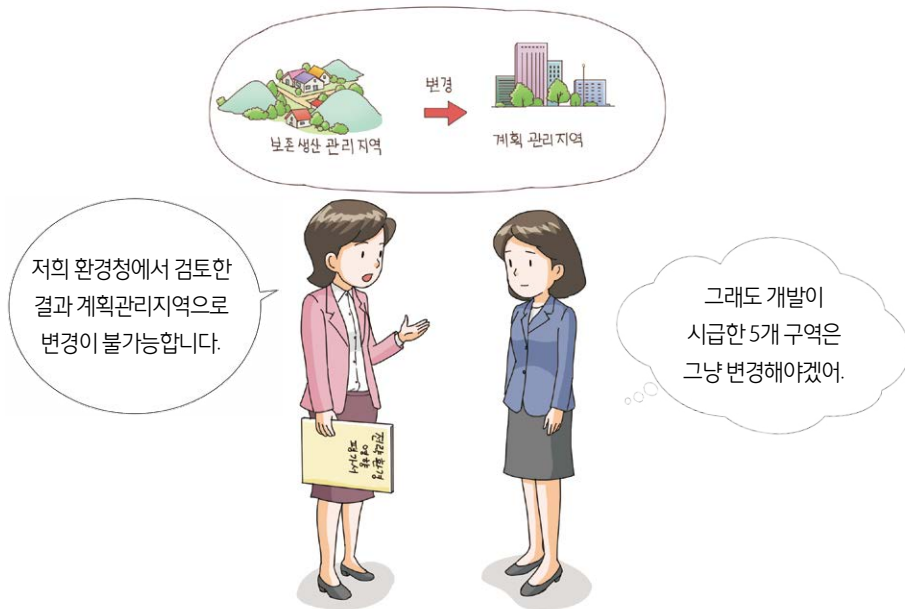
지적 내용

A도는 산하 시·군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에 따르면 보존·생산관리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협의 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고
-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의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
- 한편, A도는 보존·생산관리지역 24개 구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B환경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협의 내용을 통보받음
- 그런데 A도는 19개 구역만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나머지 5개 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이에 대해 B환경청장에게 추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신청 취지

- 산하 시·군 공무원들이 B환경청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B환경청에서 의견을 표시하는 공문을 보내오지 않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인정여부



- 협의 주체인 신청인들이 B환경청에 추가 협의를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하 시·군 담당자가 B환경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B환경청으로부터 추가 협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회신받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주의요구함

3 결재 또는 승인절차 등을 누락한 경우

1 승인절차 없이 내부시스템 관리자권한을 용역업체 직원에게 부여

지적 내용

A청 전산 담당자 ○○○은 “기술평가위원 선정·교섭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이 지명한 운용관리자 외에 권한 없는 자가 ‘기술평가위원 선정·교섭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 인증서를 감사담당관의 지명을 받지 않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해 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는 등 보안 업무를 태만히 함



내부시스템 보수를 위해서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한테 관리자권한을 위한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줘도 되겠지.

신청
취지

- ‘기술평가위원 선정·교섭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계약조건에 따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였음



인정여부



- 계약조건에는 외부인력이 상주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건은 없으며
 - 관리자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결재권자인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승인절차 없이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2

지출 관련 서류 확인을 태만히 하여 횡령 사건 발생

지적 내용

A초등학교 행정실장 ○○○은 소득세 납부 등 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 「B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 지급 시 계좌입금·전자자금 이체를 하고, 집행 후 채권자의 영수증서를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행정실 소속 △△△이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계좌이체 하도록 결재한 지출결의서와 달리 현금인출하는 것으로 작성한 출금전표에 출납원으로서 날인을 하였고
- 집행 후 영수증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여 △△△의 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신청 취지

- 출납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 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하여 담당자 의견을 존중하였고, △△△이 치밀한 의도를 갖고 본인을 속여 횡령하였으므로 사전에 횡령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었음
- 또한 횡령 사실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된 즉시 학교장과 교육청에 보고하였고, 횡령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려하여 변제하도록 하였음



인정여부



- 현금 출금전표에 직접 출납원 날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납부영수증이 붙은 증빙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B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4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축소·은폐·기망·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1 개발 미완료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

지적 내용

A시 팀장 ○○○ 등 2명은 이동형 계측기의 준공검사를 수행하면서

- GPS 기능이 무선으로 실현되지 않는 등 2가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 납품업체로부터 케이스의 금형 제작이 늦어져 준공검사 이후 케이스를 만들어 장착하여 납품하겠다는 설명을 들어 이동형 계측기가 준공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 결재권자인 과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으로 결재를 상신하여 준공 처리하였고
- 준공 처리 후 8개월이 지날 때까지 업체에서 납품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신청 취지

- 이 건 처리단계별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였음



인정여부



- 결재권자에게 이동형 계측기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 결재를 받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위 사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면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요구(안)대로 징계요구함

2. 자체감사기구: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사례

2015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극행정면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서는 자체감사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본 사례집을 작성하면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주요 적극행정면책 사례를 제출받아 계약, 시설·재산관리, 예산집행, 복지·교육 등 업무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수행 과정에서 각 기관이 유사한 업무에 대해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기관의 적극행정면책 주요 사례를 참고한다면 면책 여부 검토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체감사기구의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사례〉

업무 유형		주요 사례
계약	공사	-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운반 차량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 - 농공단지 조기 준공을 위해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기존 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공사 실시 - 하차 분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설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공사 추진 -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학교 천장 전기공사 분할 계약
	구매	- 폭설에 따른 항공기 결항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설제 구매 수의계약 체결 - 신규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컬러프린터 등 구매계약 체결
	용역	- 주식양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성과물을 선 납품받은 후 용역계약 체결 -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1차 용역 실패 후 추가용역 실시 - 신설 고등학교에 조속한 급식 제공을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설·재산관리		- 국민임대산업용지의 의무 임대기간 전에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 영구임대주택 내 장기미임대 상가를 주민 탁구장으로 조성하여 무상임대 - 생태·환경자원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교환 - 감정평가자 추가 선정으로 수수료가 증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교환차액 예산 절감 - 공영주차장의 지속 운영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허용
예산집행		-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신도시에 119안전센터 임시청사 건립 -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예비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을 지원 - 입주기업의 영업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
교육·복지		- 학생 불편해소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기 중 재량휴업일 추가 지정 - 대학교 강사 부족으로 명예교수에게 강의 학점 초과 배정 - 공적자료가 아닌 해충증명서 등을 근거로 연금보험료 소급 납부예외를 적극적으로 인정 - 재해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계 약 분 야

1 공사계약

1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운반 차량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

지적
내용

A공사는 “B구간 주배관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 장비 고장 등의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지자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배관 운반을 위한 특수 차량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
- 그런데 위 차량의 개발과정에서 배관지지대 결합방식 등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입증시험 중 배관에 거동현상(움직임)이 일어나 추가적인 보강 공사비가 발생



신청
취지

- 특수 운반 차량 개발과정에서 현장 시연회를 개최하여 설계부서 및 설계사와 함께 검토 · 확인하였고, 공사기간 단축 방안 선정 시 내부결재 및 보고절차를 거쳤음
- 또한 특수 운반 차량 개발로 공정을 총 5.5개월 단축하는 등 계획한 공사기간에 맞춰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지지대 결합방식 검토 등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적기 가스공급을 위하여 기존에 없던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수립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 결과적으로 최초 계획한 공사기간에 맞춰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안정 및 적기 가스공급 등 공익을 도모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담당 소장 및 차장은 당초 “견책”에서 “경고”, 담당 과장은 “감봉”에서 “견책”하는 것으로 변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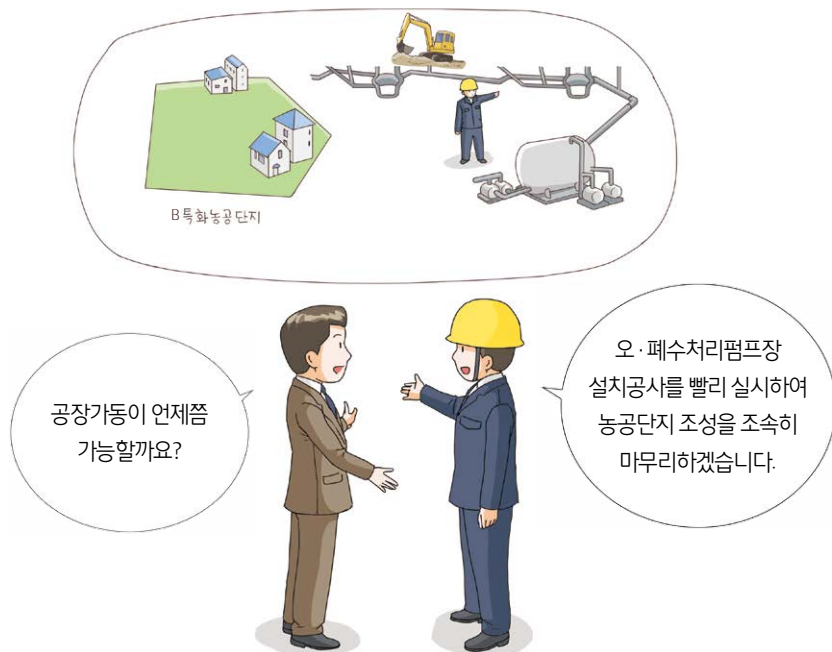
2

농공단지 조기 준공을 위해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기존 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공사 실시

지적 내용

A군에서 B특화농공단지 내 오·폐수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는 B특화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사업 목적이 달라 별도의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데도
- 별도로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기 공사 중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한 후 공사를 실시



**신청
취지**

- 오·폐수연계처리 중계펌프장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별도 공사로 발주할 경우 설계 및 입찰에 최대 64일이 소요됨
- 농공단지 입주가 예정된 선분양 업체의 공장가동이 늦어질 경우 분쟁 발생 우려가 있어 농공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중계펌프장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추진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중계펌프장은 당초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없었으나 환경보전을 위해 오·폐수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C환경청의 의견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게 된 시설로
- 분리 발주하였을 경우보다 공사기간을 34일 단축하여 농공단지 조기 준공 및 분양실적 향상에 기여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

※ 위 사례는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경징계”에서 “기관주의”로 변경됨

3

하자 분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설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공사 추진

지적 내용

A양수발전소에서 부품 손상으로 발전이 정지되자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 위 회사 「공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긴급공사 발생 시 즉시 공사업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원을 임명하여 우선 공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고, 착공 후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 담당 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위 발전소는 우선 착공할 것을 지시한 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계약을 의뢰하고 계약의뢰일로부터 3일 후에 준공 처리



신청
취지

- 양수발전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여 공사 관련 전문가들과 원인을 파악하였으나 제작사와 하자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함
- 이에 긴급복구공사에 착수한 후 공사 범위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준공 시점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음



검토내용 및 결과

- 고장난 발전설비의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발전정지기간을 최소화하고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므로 공익 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4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학교 천장 전기공사 분할 계약

지적
내용

A교육청은 석면 시설 교체를 위한 학교 천장 전기공사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고,
- 추정가격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 A교육청은 B중학교 등 3개 학교의 천장 전기공사 3건에 대해 건별로 업체를 각각 지정하여 1인 수의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통합계약 대비 예산 절감 기회 상실



신청
취지

-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여야 하나, 위 3개 학교를 통합하여 계약할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져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공사업체들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음



검토내용 및 결과

-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계약업체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함
-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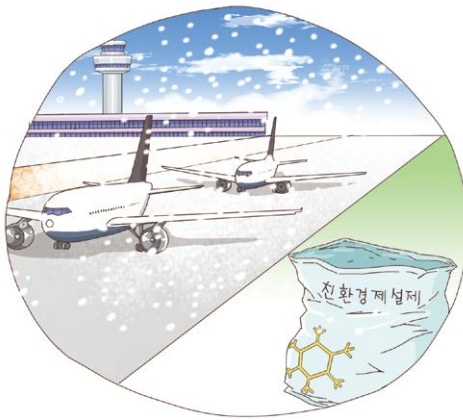
2 구매계약

1 폭설에 따른 항공기 결항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설제 구매 수의계약 체결

지적 내용

A공사는 B국제공항에 폭설 장기화로 항공기 결항사태가 발생하자 “제설제 구매 계약”을 추진하면서

- 위 공사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통한 물품 자체취득 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 기존 계약업체가 ‘납품 지연’을 통보해오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제설제를 구매



항공기 결항사태 해소를 위해
제설제를 조속히
구매해야 되겠군.



**신청
취지**

- 지역 내 폭설로 인한 제설제 구매 대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설제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긴급히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 결항으로 인한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항공기 이·착륙 및 여객수송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계약 추진과정에서 결재권자의 결재 및 보고절차를 거쳤으며
- 폭설에 따른 결항사태를 해소하고, 신속한 제설제 확보를 통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및 원활한 여객수송을 지원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2

신규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컬러프린터 등 구매계약 체결

지적
내용

A공사는 “B시스템” 구축에 따른 “컬러프린터 · 컬러복합기 신규 설치 업무”를 추진 하면서

- 사업추진 도중 위 시스템을 회사 전체로 확대하는 계획이 보류되었는데도 컬러 프린터 등 구매계약의 취소 또는 납품 일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구매를 추진
- 그 결과 컬러프린터 등 신규구매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의 과다 지출 발생



신청
취지

- B시스템의 확대계획 보류는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이미 확정된 계약 내용을 사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 변경된 계획에 부합하도록 향후 추진 일정 및 컬러프린터 등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소속 부서장의 결재 및 일상감사 이행 등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컬러프린터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규격 검토를 충실히 거쳤음
- 또한 예측하지 못한 계획변경이 발생했는데도 선제적으로 컬러프린터 등의 추가적인 활용방안 등을 검토·도입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경고”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3 용역계약

1 주식양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성과물을 선 납품받은 후 용역계약 체결

지적 내용

A공사는 B진흥원 설립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C기금' 주식을 B진흥원에 양도하기로 결정되자, 주식양도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C기금 주식 양도가액 선정 관련 국세청 세무질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 위 공사의 「계약사무세칙」 제13조 등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 계약금액 · 이행 기간 등을 명백히 기재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위 계약의 주요 과업인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용역계약 체결일보다 17일 이전에 작성 ·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성과물을 먼저 납품받은 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



신청
취지

- B진흥원에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국세청 세무질의가 완료되어야 하는 등 업무의 시급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전답변 신청서를 우선 납품받은 것으로 B진흥원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용역계약 체결 절차상 부분적 하자는 있으나, 계약상대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 등 고의·중과실이 없으며
- 주식양도 시 발생하는 과세 리스크 및 자원 유출을 최소화하고, B진흥원 설립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달성을 지원하고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개인주의”에서 “부서주의”하는 것으로 변경됨

2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1차 용역 실패 후 추가용역 실시

지적
내용

A원자력발전소에서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비용역을 시행하면서

- 계약상대자가 이물질 제거에 실패하자 원인분석을 통해 용역 실패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2차 추가 이물질 제거 역무를 지시한 후 1차 용역 대가와 2차 추가용역 대가를 모두 지급



**신청
취지**

- 비파괴검사로 확인된 증기발생기의 이물질 제거방법이 확실하지 않아 용역사와 제거방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하였음
- 또한 이물질 제거 역무의 특성상 성공 가능성을 100% 보장할 수 없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곤란한 점이 있고, 1차 제거에 실패한 후 법률질의를 통해 용역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증기발생기의 이물질 제거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1차 제거 실패 후 추가용역을 시행하였고
- 계약상대자에게 1차 이물질 제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협상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감액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3

신설 고등학교에 조속한 급식 제공을 위해 수의계약 체결

지적
내용

A고등학교에서 위탁 급식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는데도
-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위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신청
취지**

- 당초 B중학교만 운영하다가 행정인력의 추가 증원 없이 A고등학교를 개교하였고
신학기 업무까지 병행하게 되어 행정실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 급식 인원이 120여 명에 불과하고 학교가 시 외곽에 위치하여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학교 개교 시기에 맞추어 급식을 조속히 시행
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위탁 급식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당시 업무가 과중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 120여 명의 적은 급식 인원수로는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
개교 시기에 맞추어 급식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경징계”에서 “경고”로 변경됨

시 설 · 재 산 관 리 분 야

1 국민임대산업용지의 의무 임대기간 만료 전에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지적
내용

A공사에서는 국민임대산업용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위 공사의 「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 및 분양전환 방침」 등에 따르면 국민임대산업용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차인의 신청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도
- 임차업체가 자체 소유 토지와 A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걸친 건물(부속동)을 신축하기 위해 A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요구하자
- 해당 건물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하도록 최초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불가 등을 우려하여 ‘사용승낙’ 대신 ‘분양전환’을 승인



신청
취지

- 임차업체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도로 출입구 유지를 위해 A공사가 임대한 토지에 걸친 부속동 신축이 필요하였고
- 분양전환 조건(최소임대기간 5년)은 저렴하게 공급하는 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전매·약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입주기업의 사용토지와 소유자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분양이 불가피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조선소 폐쇄 등 지역경제 침체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임대산업단지의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사의 재무개선에도 기여함
- 또한, 관련 사항에 대한 내부방침을 수립하여 결재를 받는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2

영구임대주택 내 장기미임대 상가를 주민 탁구장으로 조성하여 무상 임대

지적
내용

A공사는 영구임대주택 장기미임대 상가를 관리소에 무상임대하면서

- 「제7차 장기 미임대 상가 사회적 기업 등 유치방안」 및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등에 따르면 무상임대 시에도 관리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 상가 내부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도
- A공사는 상가 내부 일부를 체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소의 요청에 따라 공사 예산을 사용하여 탁구장을 조성하고 탁구대 등 비품을 구입



신청
취지

- 해당 단지는 B동 기초생활수급자의 70%가 거주하는 단지로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거주비율이 높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음
- 이에 관리소에서 주민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C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주민 건강프로그램(탁구교실)이 선정되었으나, 해당 사업 규정상 보조금은 수선비, 사무용 비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A공사에 탁구장 조성을 요청하였음
- A공사는 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과 상가 환경정비로 인한 신규입점 증가 효과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1년 단위로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입주민 생활 편의 증진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상가 활성화를 통한 유상임대 확대 등 적극적으로 공사 자산의 가치상승을 도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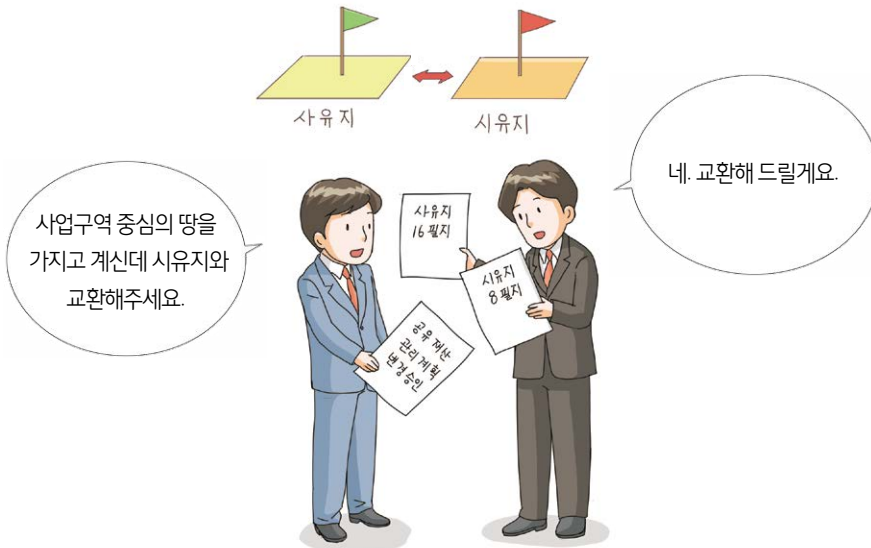
3

생태·환경자원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교환

지적
내용

A시는 “B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하면서

- 「공유재산 업무편람」 제3장 제3절에 따르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교환은 다른 방법으로 재산 취득이 곤란할 경우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환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A시는 사업구역 중심지역에 포함되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전관리지역 등 활용가치가 낮은 사유지 16필지와 사유지 8필지를 교환



신청
취지

- 사유지와 토지교환을 한 사유지는 “B골 가꾸기 사업” 대상지의 중심지구에 해당하지만 불법상행위 등에 이용되고 있어, 토지를 확보하여 생태·환경 보전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 A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B골 지역의 생태·환경자원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한 것은 공익에 부합하고 A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 위 사례는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훈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4

감정평가자 추가 선정으로 수수료가 증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교환
차액 예산 절감지적
내용

A공단은 국유재산을 B공사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면서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위 공단 「재산관리규정」 제48조에 따르면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두 개 감정평가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교환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 위 공단은 교환 상대방인 B공사와 감정평가 시행방법 및 비용부담 주체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 C·D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B공사에 감정평가 의사를 물어 E감정평가법인에 추가로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



**신청
취지**

- 감정평가 시행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환 상대방인 B공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 결과적으로 국유재산의 재산가액이 높게 평가되어 공단에서 B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교환차액을 절감할 수 있었음



검토내용 및 결과

- E감정평가법인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결과적으로 공단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임이 인정됨

※ 위 사례는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개선요구”로 변경됨

5

공영주차장의 지속 운영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허용

지적
내용

A청은 “B 공영주차장 사용·수익 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료는 사용·수익 개시일 전까지 선납토록 하여야 하고, 분납하고자 할 때에는 수허가자가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수허가자로부터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사용료를 사용·수익 발생 후부터 4회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함



신청
취지

- 수허가자가 자금난 등으로 사용·수익 개시일 이전 사용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공영주차장의 개시일이 지연될 경우 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 되었음
- 이에 계획된 사용·수익 개시일을 준수하기 위해 신속히 분할 납부하도록 결정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해당 허가업무를 처리하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지속·안정적 운영이라는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예 산 집 행 분 야

1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신도시에 119안전센터 임시청사 건립

지적
내용

A공사는 B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소방기본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소방서 등 공공 청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해야 하는데도
- C사업단은 D도와 E시의 요청에 따라 119안전센터 임시청사를 건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신청
취지

- B지구(2,500세대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부족 문제로 소방서는 2021년 이후에 건립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가 계속되었음
- 이에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장래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119안전센터 임시청사를 제공하였으며, 임시 청사는 향후 정식 청사 건립 이후에는 홍보 시설로 활용 가능함



검토내용 및 결과

- 기반시설이 부족한 신도시에 119안전센터를 조기에 마련하여 소방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였고,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으며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등 면책 기준을 모두 충족함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2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예비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을 지원

지적
내용

A군은 B종합장묘센터 진입도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를 예비비 예산으로 집행하여 C마을 주민협의회에 지원하면서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은 당초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데도
- A군은 C마을에서 당초 지원한 보조금 예산으로 구입 가능한 염화칼슘 살포기를 예비비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지원



**신청
취지**

- 제설지역 대상인 B종합장묘센터 진입도로는 동절기 결빙이 심한 지역으로 기존 염화칼슘 살포기를 사용하던 중 폭설로 인해 기계 고장이 발생하여 긴급히 새로운 기계가 필요하였음
- 이에 예비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장묘센터 이용객 등 다수의 불편과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겨울철 다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신속히 제설작업을 한 것은 공익에 부합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예비비를 집행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또한 군도 등의 제설작업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위 사례는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훈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3

입주기업의 영업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

지적
내용

A진흥원은 B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제조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 위 시「재무회계 규칙」제23조 및 위 진흥원「재무회계 규정」제18조에 따르면 세출 예산의 지출은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위 진흥원은 입주기업의 제조공간 시설 구축 예산이 부족하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후 이사회 및 B시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



신청
취지

-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입주기업의 민원 및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B시와 협의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추가 경정예산을 집행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사업일정 지연으로 예상되는 입주기업의 영업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의 결과였고,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 면책 기준을 충족함

※ 위 사례는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훈계요구”에서 “주의요구”로 감경됨

교 육 · 복 지 분 야

1 학생 불편해소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기 중 재량휴업일 추가 지정

지적
내용

A고등학교에서 재량휴업일을 지정하면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하는데도 학사일정 예정에 없던 재량휴업일을 학기 중 2회 추가 지정함



신청
취지

- 첫번째 재량휴업일인 5월 8일(월)의 경우, 다음 날인 5월 9일(화)이 임시공휴일(대통령 선거)로 지정됨에 따라 원거리 거주 학생들의 등교 불편 해소(학생의 75% 이상이 해당 광역시 외 거주) 등을 사유로 지정하였고
- 두번째 재량휴업일인 9월 18일의 경우, 다음 해 고교진학 예정자 수는 상당수 감소하였으나 본교 입학정원은 거의 감축되지 않아 입학 경쟁률 하락을 우려하여 교사들과 재학생들이 인근 중학교에서 신입생 유치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 지정하였음
- 재량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 의견수렴(90% 이상 찬성)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내부결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원거리 거주 학생들의 등교 불편을 해소하고 신입생 모집을 통한 학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 학부모의견 조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는 등 면책 기준을 모두 충족함
-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2

대학교 강사 부족으로 명예교수에게 강의 학점 초과 배정

지적
내용

A대학교는 대학원 신학기 강의를 편성하면서

- 「A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예교수는 퇴직일로부터 5년까지 해당 전공 및 교양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학기당 3학점 이내로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도
- ○○○교수와 △△△교수에게 각각 6학점(2개 과목)과 9학점(3개 과목)을 배정하는 등 명예교수에게 ‘담당 가능 강의 학점’을 초과하여 강의를 배정



신청
취지

- 해당 교수의 퇴직 이후 후임 교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목 특성상 우수한 강사 확보가 어려웠고, 수강생들에게 시간강사보다 명예교수가 더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또한 대학원생들이 연구역량과 다양한 교육경험을 가진 교수의 수업을 듣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학기 종료 후 수강생들의 강의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도 높았음



검토내용 및 결과

-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강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강사 확보가 어려운 교과목 및 교직이수 과목 등 특정 과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명예교수의 강의 학점 초과가 발생하였고
 - 강의 배정 시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3

공적자료가 아닌 해촉증명서 등을 근거로 연금보험료 소급 납부예외를 적극적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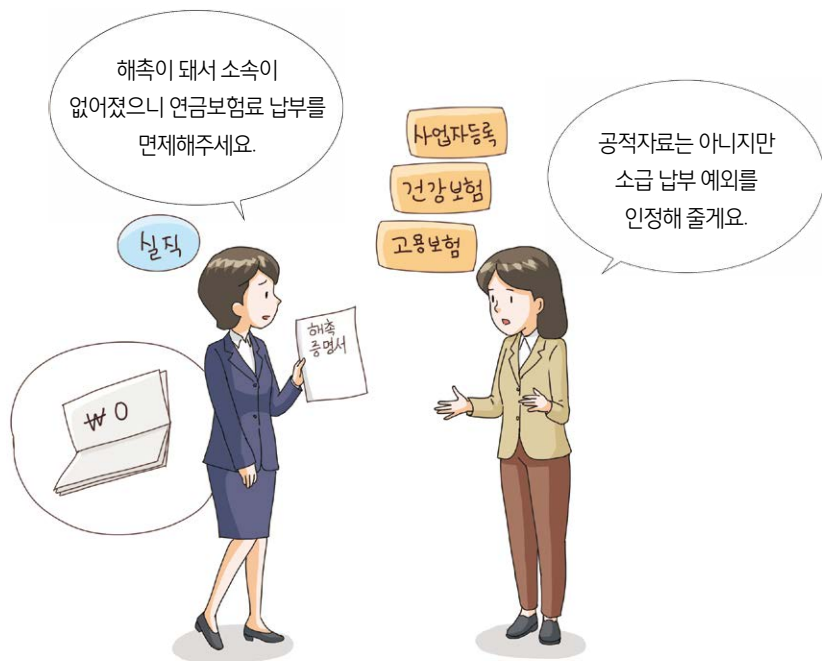
지적
내용

A공단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소급 납부예외제도를 운영하면서

- 위 공단 내부규정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 중인 지역가입자가 휴·폐업, 실직 등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 예외를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 자료 또는 건강·고용보험 자료 등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소급 납부예외*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 납부예외: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 공적자료가 아닌 민간에서 발급한 해촉증명서 등을 근거로 소급 납부예외를 인정



신청
취지

- 공적자료 보유자에게만 소급 납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공적자료 이외의 자료로 납부 예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반영하여 최근 해촉증명서 등으로도 소급 납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이 개정되었음



검토내용 및 결과

-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적자료 보유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최근 공적자료 외에 해촉증명서 등으로도 소급 납부예외를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당초 “주의요구”에서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변경됨

4

재해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지적
내용

A공단은 ‘흉터 장애’ 및 ‘왼쪽 팔 기능장애’가 발생한 근로자가 장애급여를 청구한 데 대해 장애등급을 결정하면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등에 따르면 장애계열이 다른 장애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화상으로 인한 ‘흉터장애’(9급)와 그로 인해 파생된 ‘왼쪽 팔 기능장애’(12급)가 발생한 위 급여청구 건은 그 중 높은 ‘흉터장애’ 9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2가지 장애등급을 산정한 후 이를 조정하여 8급으로 결정



신청
취지

- 재해자의 흉터가 전체 체표면적의 약 50%에 해당된다는 장해통합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 왼쪽 팔기능 장애의 원인이 되는 흉터(9%)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체표면적의 40% 이상 흉터가 남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위 사례와 유사한 심사 결정 취소 사례를 찾아 두 개의 장해원인이 동일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밝혀내 장해등급을 9급에서 8급으로 조정하였음



검토내용 및 결과

- 장해통합심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흉터장해'와 '왼쪽 팔 기능장해'의 원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등 산재 노동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됨

※ 위 사례는 모든 면책 기준을 충족하여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하는 것으로 결정됨

참고자료

1.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서식
2. 현장면책 검토요청 서식
3. 적극행정면책 신청 서식
4. 적극행정지원 제도 관련 법규

참고자료 1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서식

사전컨설팅 신청서

신청기관 (부서명)		자체감사기구에 컨설팅 신청이 접수된 일자	
건 명			
1.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내용 2. 관련 법령 및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1) 관련 법령 2) 사업개요 또는 추진경과 3. 사전컨설팅 신청 사유 1) 주요 쟁점 2) 자체감사기구에서 확인 및 점검한 사항 3)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배경			

※ 붙임: 기존 자체감사기구에 접수된 신청서 및 관련 증빙·근거법령·해당 사업의 세부자료 등

참고자료 2 현장면책 검토요청 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 요청서

일련 번호	소관 부서 (담당자)	제 목	감사 시 논의된 지적요지	면책 사유
1	○○부 ◇◇국 □□과 (홍길동)	(예시) ○○사업공사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에 특혜 제공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일부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 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면책요청

작성자: ○○부 감사관 이몽룡 (서명)

참고자료 3 적극행정면책 신청 서식

감사 관련 소명서

1. 제출자	주 소							
	기관명		직 명					
	성 명		전화번호					
	감사사항과 제출자의 관련성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	(예시) ○○집행관리실태 감사(하수관거설치공사 계약 관련)							
3. 소명자료제출 취지(해당사유 모두 표시)	사실관계 상이()/ 새로운 증거()/ 법령해석 차이()/ 적극행정면책()/ 정상참작 등 기타()							
4. 소명요지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							
위 감사 및 지적 내용에 관하여 소명(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1. 대리인 위임장 2. 소명자료(매) 3.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감사원 귀중								
※ 소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이해관계자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은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246쪽 서식의 별첨자료1]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5조 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업무처리의 공공의이익 여부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 기 타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246쪽 서식의 별첨자료 2]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을 것	
○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참고자료 4 적극행정지원 제도 관련 법규

감사원법(법률 제13204호, 2015. 2. 3.)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41호, 2015. 5. 18.)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주)}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13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와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주) 감사원은 2018년 12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완화(103~104쪽 참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말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항을 동 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완화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309호, 2018.12.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34조의3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 관련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또는 지적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제2호에서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란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주의요구 (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5. “감사소명제도”란 감사원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행정면책의 신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절차 등의 제도를 말한다.
6. “감사소명자료”란 감사원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감사원에 제출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 등을 말한다.
7. 제5호 및 제6호에서 “이해관계자”란 현재 실시 중이거나 처리 중인 감사결과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및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면책

제3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②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칙에 따른 면책은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7조(유의사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및 처리

제8조(소명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실지감사(實地監査)가 종료한 후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감사 관련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별지 서식 별첨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조세(관세, 지방세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시정요구 전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감사소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안내하기 불가능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서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9조(소명자료의 접수 및 처리) ① 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와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 ① 감사대상기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감사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처리를 할 수 있다.

제12조(적극행정면책 통보) 감사원은 제8조의 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검토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명자료의 제출자에 대한 통지) 감사원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불문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통지를 갈음한다.

제14조(보칙) ①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여부 및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등 처리는 「감사원법」과 감사원규칙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②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발행일	2019년 4월
발행처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
발간등록번호	11-1040000-000331-14
도움주신 기관들	교육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디자인 · 인쇄	(주) 초이스디자인 02-2275-2633

발 간 등 록 번 호

11-1040000-000331-14

국민을 웃게하는 힘!
적극행정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



감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TEL : 02-2011-2114 www.bai.go.kr